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2007. 12.

김승래 · 김우철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한 국가의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에 관한 추정은 조세제도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에 해당된다. 조세의 효율비용은 과세에 따른 후생비용 중에서 세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초과부담 또는 경제적 순손실 등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조세의 효율비용에 대한 추정은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임무이며 정책입안자의 세제개편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매년 크고 작은 세제개편이 단행되고는 있으나 이는 주로 조세체계의 효율성 개선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단기적 정책목표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이 존재하여 왔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유지와 국제경쟁의 심화에 따라 성장 및 고용이 정체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성장친화적인 조세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조세체계의 효율성 강화 측면의 세제개편은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실증자료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는 모형의 구축과 많은 자료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연구 실적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조세제도 효율성을 역사적 실증자료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추정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판단 및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모형의 주요한 특징은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
에 있어 기존의 단순 캘리브레이션 모형의 계산방법에서 나아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의 한계효율비용
을 실증적으로 추정 및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부분
의 조세 관련 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들이 모형 설정 시 통
계적인 추정 및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적절한 계량적인 연구
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분석모형을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하여 구축하는 것은 현실경제로의 모형 적합
성을 높이고 현실의 적용 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승래·김우철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
다. 저자들은 본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분
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중간보고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김성태 청주대 교수, 이철인 성균관대 교수,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게 우선 감사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최종단
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함께 감사드린
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단계별로 저자들
을 도와준 강미정 주임연구원, 강성훈 연구원, 주한미 행정원에게
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황 성 현

요약 및 정책시사점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조세가 효율적인지는 세수 한 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로 평가하므로, 이러한 비용의 측정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조세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세목별 초과부담(excess burdens or deadweight costs)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정 세목의 한계초과부담이 기타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상대적으로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부분균형분석의 틀 안에서는 각 재화나 요소시장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상태에서 초과부담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분균형 분석에 비해 다수 시장이 존재하는 여러 부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일반균형분석의 경우도 기존의 계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들은 채택된 행태탄력성들이 단순 가정치(guessimates)이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 목적으로, 다른 시점의 표본구간(sample period)에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추정된 값들을 단

순히 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한 국가의 조세제도의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을 추정하고 서로 비교하는 데 있어, 내적으로 일관된 분석체계(internally consistent framework)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체로 경제의 생산자 행태와 소비자 행태 추정의 기반이 되는 이론모형의 구조 설정에 있어 검정되지 않은 다소 강한 사전적 제약을 도입하거나,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통로로 초과부담 추정의 주요 요소인 각종 행태탄력성(behavioral elasticities)의 값들을 대체로 다른 연구로부터 단순히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세제도의 효율성(efficiency)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전반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일관된 일반균형의 틀 내에서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서로 비교·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 구조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왜곡(distortions)을 초래하고 있는지, 세수 증대(revenue-raising) 측면에서 조세 효율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민후생 측면에서 경제적 비용은 어떠한지를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적정 조세체계(optimal tax mix)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캘리브레이션 CGE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방법에서 나아가, 실제로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역사적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행 조세제도를 세목별로 비교 평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

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의 분석 대상기간인 1970~2004년의 매기별로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과거 35년 동안 일반소비과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6.2%에서 15.5%, 수입과세의 경우는 4.4%에서 9.6%, 노동과세의 경우는 9.9%에서 21.2%, 그리고 자본과세의 경우는 5.9%에서 29.8%로 각각의 실효세율 변화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하였다. 즉,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평균은 일반소비의 경우 8.2%, 수입의 경우 5.7%, 노동의 경우 11.1%를 차지하였다. 조세원칙적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프로젝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경제주체의 행위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효율 손실로서 조세 효율비용은 정부프로젝트의 단순금액에 추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우리 경제의 정부지출은 한계효율비용 이상의 실질적인 정상수익률을 가져야 조세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200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자본과세나 노동과세 등 소득 관련 과세에서 소비 관련 과세로 세원을 이동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세목별 조세의 한계효율비용 추정치는 세부 세

율구조 개편, 각종 공제나 비과세·감면조항 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실효 세부담구조가 매기별로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동시에 단순부분균형의 틀과는 달리 일반균형의 틀에서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각종 행태탄력성이나 관련 생산기술구조와 소비패턴 변화, 기타 경제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 크기가 다소 복잡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과세 및 자본과세의 경우에 그 실효세율 변화 대비 한계효율비용의 변화 추세가 다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은 한국 경제의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시장변수에 보다 탄력적이고 반응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어온 경제구조의 변화와 대외 개방화의 진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세 효율비용의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 엄밀성을 가지고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 각종 모형의 탄력성 변수에 보증되지 않은 각종 사전적 제약조건을 가하지 않는 신축적인 행태방정식들을 사용하였다. 동시에 분석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제 실증자료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추정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균형적 구도하에서 주요 세목간 효율비용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주로 시계열적 거시 총량자료에 의존하고 단일 소비자를 가정하며 대체로 큰 범주의 상품총계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형의 조세 효율비용 추정을 위한 세목별 암묵적 유효세율의 경우 그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세제의 누진적 요소에 의한 효율비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상품별, 세목별, 그리고 소비자 그룹별로 관련 분석을 심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시적인 조세패널 자료를 이용한 조세제도의 효율성 평가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행단계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7
II.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22
1. 조세 효율비용의 기본 개념	22
가. 사회적 순편익과 초과부담	22
나. 조세의 사회적 비용과 효율비용	23
다. 조세의 효율비용 측정: 단일 재화시장의 단순분석	25
라. 조세의 한계적 초과부담	29
2.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부분균형적 접근	31
가. Browning(1976)의 주요 내용	32
나. Browning(1987)의 주요 내용	33
3.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일반균형적 접근	37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42
1.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및 특징	42
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42
나. 소득세제	47
다. 소비세제	71
라. 재산세제	75
마. 기타	76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비교	78

IV.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 모형	92
1. 소비과세, 관세, 노동과세의 효율비용	94
가. 분석모형 설정	94
나. 자료 정비	97
다. 계량경제학적 추정	102
2. 자본과세의 효율비용	107
가. 분석모형 설정	107
나. 계량경제학적 추정	110
3.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 추정 결과	115
 V. 결 론	 124
 참고문헌	 126
 부 록	 131

표 목 차

<표 I- 1> 조세 효율비용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21
<표 II- 1> 조세 효율비용의 추정: 기존 연구 결과	40
<표 III- 1> 우리나라의 국제·지방세의 비중(1970~2005)	43
<표 III- 2> 우리나라의 직·간접세의 비중(1970~2005)	43
<표 III- 3>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규모 및 조세부담률 추이(1970~2005)	45
<표 III- 4>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의 조세 비중	46
<표 III- 5>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49
<표 III- 6> 근로소득공제의 변천	51
<표 III- 7>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53
<표 III- 8>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추이	55
<표 III- 9>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	57
<표 III-10> 국민계정 대비 소득과약 비율(2004년 귀속)	57
<표 III-11> 법인세율의 변화	59
<표 III-12> 법인 관련 조세감면	64
<표 III-13> 법인세 감면 제도의 실적 변화	67
<표 III-14> 개별소비세의 세수추이 및 구성비	74
<표 III-15> 재산세의 세율구조 변천	75
<표 III-16> 연도별 재산세제 세수	76
<표 III-17> 관세수입의 추이	78
<표 III-18>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80

<표 III-19>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GDP 대비 총세수 비교(1975~2006)	81
<표 III-20>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득세제 비교(1975~2006)	82
<표 III-21>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5)	83
<표 III-22>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조세구조 변천(1970~2005)	85
<표 III-23> 6개 부문별 GDP 대비 세수 비중(2005년 기준)	88
<표 IV- 1> 우리나라 주요 세목 분류별 세부담 현황(1970~2004)	100
<표 IV- 2>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분류별 암묵적 유효세율(1970~2004)	101
<표 IV- 3> 생산자 행태 모형의 모수 추정치(1970~2004)	104
<표 IV- 4> Normalized Quadratic 순공급의 평균 가격탄력성(1970~2004)	105
<표 IV- 5> 소비자 행태모형의 모수 추정치(1970~2004) : 일반소비 vs. 여가	106
<표 IV- 6> Normalized Quadratic 수요의 평균탄력성 (1970~2004) : 일반소비 vs. 여가	107
<표 IV- 7> 자본 포함 생산 모형의 모수 추정치(1970~2004)	114
<표 IV- 8> 한국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 추정치(1970~2004)	122
<부표 1> 지출항목별 추계방법	132
<부표 2> 민간소비지출의 포괄범위	136
<부표 3> 민간소비 추계방법(요약)	138
<부표 4> 정부소비 추계방법(요약)	141
<부표 5> 총고정자본형성의 포괄범위	144
<부표 6> 총고정자본형성의 자본재 형태별 분류	145

<부표 7> 총고정자본형성 추계방법	147
<부표 8> 재고증감의 포괄범위	147
<부표 9> 국외거래 중 경상거래와 국제수지통계 경상수지	151
<부표 10>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추계방법(요약)	152
<부표 11> 소비지출 비목 및 모형에 따른 소비재 분류	153
<부표 12> OECD Revenue Statistics 기본 분류(1970~2004) ...	156

그림목차

[그림 II- 1] 사회적 순편익과 초과부담	23
[그림 II- 2] 단일시장에서의 초과부담	26
[그림 II- 3] 탄력성과 초과부담	27
[그림 II- 4] 세율과 초과부담	27
[그림 II- 5] 세수 단위당 한계초과부담의 크기	30
[그림 II- 6] 한계초과부담과 적정 정부지출	31
[그림 II- 7] 노동공급과 초과부담	34
[그림 III- 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44
[그림 III- 2] 각 제도의 효과 비교: 평균 명목세율의 분해	66
[그림 III- 3] 개별소비세의 세목별 비중	73
[그림 III- 4]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비교(2005년) ..	79
[그림 III- 5] 조세구조 비교: 우리나라와 OECD 평균(2005년)	87
[그림 III- 6] 총 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추이(1970~2005)	89
[그림 III- 7] 총 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1970~2005)	89
[그림 III- 8] 총 세수 대비 소비세제 비중 추이(1970~2005)	90
[그림 III- 9] 총 세수 대비 사회보장세 비중 추이(1970~2005)	90
[그림 III-10] 총 세수 대비 재산세제 비중 추이(1970~2005)	91
[그림 IV- 1] 주요 세목별 실효세율과 한계효율비용(1970~2004)	118
[그림 IV- 2] 한국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1970~2004) :	
일반소비, 수입, 노동과세	123
[그림 IV- 3] 한국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1970~2004) :	
자본과세	123

I. 서론

한 국가의 조세시스템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excess burdens or deadweight costs)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정 세목의 한계 초과부담¹⁾이 기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상대적으로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Browning(1976, 1987), Hausman(1981), Findlay and Jones(1982) 등 부분균형적 접근방법과 Harberger (1964), Shoven(1976), Stuart(1984), Ballard et al.(1985), Fullerton(1991), Jorgenson and Yun(1991), Diewert and Lawrence(1996) 등 일반균형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부분균형모형이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방법은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경제의 생산자 행태와 소비자 행태 추정의 기반이 되는 이론모형의 구조 설정에 검정되지 않은 다소 강한 사전적 제약(prior restrictions on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inputs and outputs)을 도입하거나,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통로로 초과부담 추정의

1)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은 세수 1단위의 추가 징수가 가지는 경제적 후생비용(welfare cost)의 크기에 관한 개념으로서 Stuart(1984)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요소인 각종 행태탄력성(behavioral elasticities)의 값들을 대체로 다른 연구로부터 단순히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초과부담의 추정은 부분균형분석의 틀 안에서는 관련 시장의 연관효과를 무시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균형분석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대부분의 계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은 채택된 행태탄력성들이 단순 가정치(guessimates)이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 목적으로, 다른 시점의 표본구간(sample period)에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추정된 값들을 단순히 복합하여 수집·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은 한 국가의 조세시스템의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을 추정하고 서로 비교하는 데 있어, 내적으로 일관된 분석체계(internally consistent framework)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전반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일관된 일반균형의 틀 내에서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계량경제학적으로(econometrically) 추정하여 서로 비교·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 구조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왜곡(distortions)을 초래하고 있는지, 세수 증대(revenue-raising) 측면에서 조세 효율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민후생 측면에서 경제적 비용은 어떠한지를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적정 조세체계(optimal tax mix)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세의 효율비용(초과부담)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주요국의 실증연구 사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970~2004년의 생산 및 소비의 경제행위와 주요 세목별 세부담 관련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세의 효율비용 계량모형(marginal excess burden model)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자 행태 및 소비자 행태 부문에 대한 연립방정식 시스템 추정방법(신축적인 normalized quadratic 함수형, 1970~2004)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경제의 주요 세목별 세입 구조를 반영하는 정부수지 부문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수 1단위의 추가 징수에 따른 추가 초과부담의 크기로서 정의되는 조세의 한계효율비용(marginal efficiency cost; MEC)을 추정하고 주요 세목 간 비교를 통하여 현행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간의 조세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Diewert and Lawrence(1996, 2002)의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였다. 또한 모형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에 사용될 통계자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 『산업연관표』, 『국민소득계정』, 『기업경영분석』 및 통계청의 『한국통계연감』, 『노동통계연감』,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 『가계조사연보』와 기타 국제 표준자료로서 OECD의 『Revenue Statistics』와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도 함께 이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조세제도 효율성을 역사적 실증자료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추정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판단 및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모형의 주요한 특징은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에 있어 기존의 단순 캘리브레이션 모형에 기초한 계산방법에서 벗어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고 전반적 조세시스템의 세목 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일관된 일반균형 틀 내에서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실증적으로 추정 및 비교 분석하여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모형의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는 보다 일반화된 행태방정식들 (behavioral equations)을 사용함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에 의하여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계산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조세 관련 CGE모형들이 모형설정 시 통계적인 추정 및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적절한 계량적인 연구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분석모형을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구축하는 것은 현실경제로의 모형 적합성을 높이고 실제 정책에의 적용 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체계적인 효율성 평가를 위한 일차적인 기초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i) 여기서는 일관된 틀 내에서의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을 목적으로, 주요 세목(major tax categories) 간 효율비용의 상호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거시적 기반의 각종 시계열자료에 의존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목별 효율비용(초과부담)을 추정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ii)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후속 연구로서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제외된 기타 세목들을 추가하고 부문별로 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세목들을 포함하는 분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한 미시적 조세패널 자료를 함께 이용한 심층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행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표 1-1> 조세 효율비용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General Equilibrium Computations of the Marginal Welfare Costs of Taxes in the United States - 연구자(연도):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 - 연구목적: 미국 조세 제도의 초과부담의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모형 분석 - 단순 calibration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GE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조세체계의 한계 초과부담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한국조세제도의 초과 부담 추정 - 연구자(연도): 김성태 외(1999) - 연구목적: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세목별 초과부담의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모형 분석 - 단순 calibration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lard et al.(1985)에 기반한 한국형 CGE모형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세, 특소세 등의 초과부담의 측정과 비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The Deadweight Cost of Taxation in New Zealand - 연구자(연도): Diewert and Lawrence(1996, 1998) - 연구목적: 뉴질랜드의 세목별 초과부담의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실증자료 분석 - 계량경제학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뉴질랜드의 소득, 소비, 수입 등에 대한 세목별 효율성을 추정하고 역사적으로 평가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주요 세목 간 효율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적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별로 조세효율성(1단위 세수증가의 후생손실 효과)을 체계적으로 심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실증자료 분석 - 계량경제학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과거자료(historical data)를 이용하여 일관된 초과부담추정 계량모형을 구성하고 한국의 주요 세목별로 유효세율구조와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고 비교·평가하는 본격적인 국내 첫 시도이며 보다 종합적인 연구

II.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본장에서는 초과부담 추정과 관련한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먼저 조세 효율비용의 경제학적 정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부분균형 접근방식에 의한 연구와 일반균형 접근방식에 의한 연구 방법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1. 조세 효율비용의 기본 개념²⁾

가. 사회적 순편익과 초과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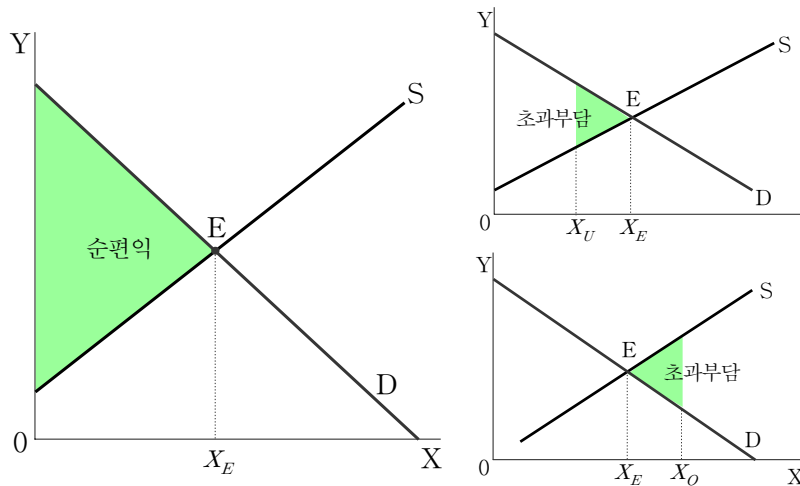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특정하게 주어진 소비량에 대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주어진 소비량에서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얻게 되는 한계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시장 수요곡선을 해당 재화의 사회적 한계가치 또는 사회적 한계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이유로 시장공급곡선은 해당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한계비용을 표시하게 된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순한계편익(net marginal benefit)이라 정의하고, 순한계편익의 누적총계를 순편익이라고 정의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가격 수용자(price taker)인 경쟁시장의 경우에 시장의 균형은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균형 수량 수준에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은 서로 일치(순한계편익은 0)되어 순한계편익의 총계인 순편익

2) 주요한 내용은 Browning and Browning(1994), pp. 329~337에 기초하여 정리

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시장의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게 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의 손실을 초과부담 또는 사회후생 손실(social welfare loss),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그림 II-1]은 최적생산 수준 X_E 에서 벗어나 과소(과대) 생산되는 X_U (X_O)의 경우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커(작아)지게 되어 순편익의 손실이 발생함을 보여주며, 이 때의 초과부담은 각 그림의 음영부분으로 표현되게 된다.

[그림 II-1] 사회적 순편익과 초과부담



나. 조세의 사회적 비용과 효율비용

정부는 일반적으로 재정수요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주어진 과세베이스에 대해서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흔히 효율성과 공평성의 달성이 중요한 조건으로 요구된

다. 조세 또는 조세제도가 효율적인지는 세수 한 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인 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로 평가하므로, 이러한 비용의 측정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공정성의 척도는 다소 모호하고 객관적인 측정 방법의 결여로 인해 효율성의 기준이 더 자주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세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는 것은 조세가 시장의 경쟁가격을 교란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의 부과는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쳐 노동공급과 여가소비의 결정에 관한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오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세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세의 초과부담이라고 정의할 때 특히 강조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정부의 세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과부담이 적은 조세는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그만큼 작기에 경제적 비용이 적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세금의 부과로부터 자원배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중립적 조세(neutral tax)라고 부르는데, 흔히 소득이나 기타 개인의 특성에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인 정액세(lump sum tax)가 이에 해당한다. 정액세는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고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조세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는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비용 이외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징세기관이 발생시키는 행정비용인 징세비(tax collection cost)와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물질적 또는 심리적 비용인 납세비용(compliance cost)이 있을 수 있다.

조세의 효율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념이 중요하다. 먼저 일반적으로 조세의 효율비용은 일정액의 세수를 얻기 위해서 사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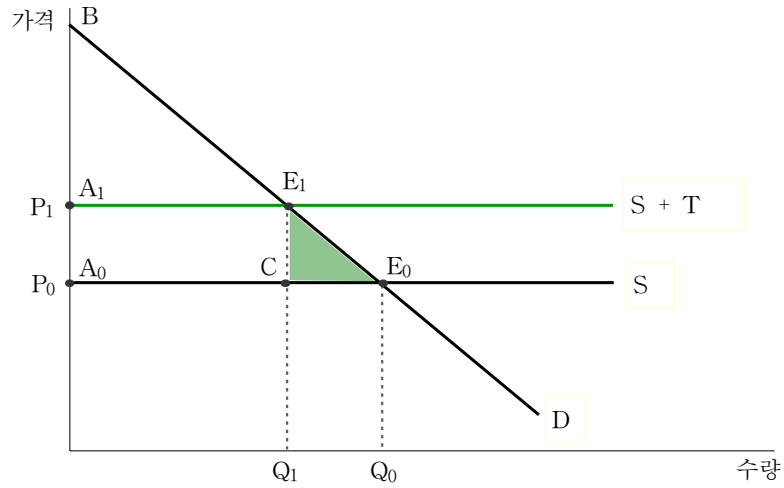
II.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25

부담하는 여러 비용 중에서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의 운용과 관련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 및 기타 사회적 손실은 제외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작용하는 총 부담에서 세수입액을 제외한 나머진 초과부담액을 지칭한다.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수는 중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 지출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세수로 확보된 금액은 비용이나 손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조세의 효율비용이란 일정액의 민간자원을 정부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뜻하게 된다.

다. 조세의 효율비용 측정: 단일 재화시장의 단순분석

아래의 [그림 II-2]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종가세의 초과부담을 설명하도록 한다.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공급이 무한 탄력적이어서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를 가정한다. 세금이 도입되기 전의 균형에서 가격은 P_0 이고 수요는 Q_0 라 할 때, 사회적 순편익(또는 소비자 잉여)은 삼각형 A_0E_0B 로 주어진다. 세율 t 의 종가세가 부과되면 가격은 P_1 으로 상승, 수요는 Q_1 으로 감소하게 되어, 순편익은 삼각형 A_1E_1B 로 감소한다. 순편익의 감소는 사다리꼴 $A_0E_0E_1A_1$ 으로 측정되고 이것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조세부담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실제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A_0CE_1A_1$ 을 제외한 부분인 삼각형 CE_0E_1 이 세금부과로 인한 순수손실인 초과부담이 되며, 흔히 Harberger의 삼각형으로 불린다.

[그림 II-2] 단일시장에서의 초과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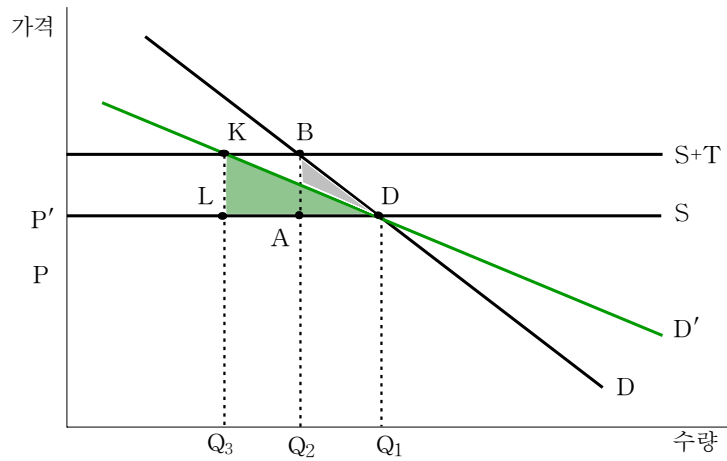
초과부담의 크기가 어떤 요인에 결정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Harberger의 삼각형의 면적을 수요탄력성(ϵ)과 세율(t)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EB &= 0.5\Delta P \cdot \Delta Q \\ &= 0.5\epsilon t^2 PQ \end{aligned} \quad (2.1)$$

단, $\Delta P = P_1 - P_0$, $\Delta Q = Q_0 - Q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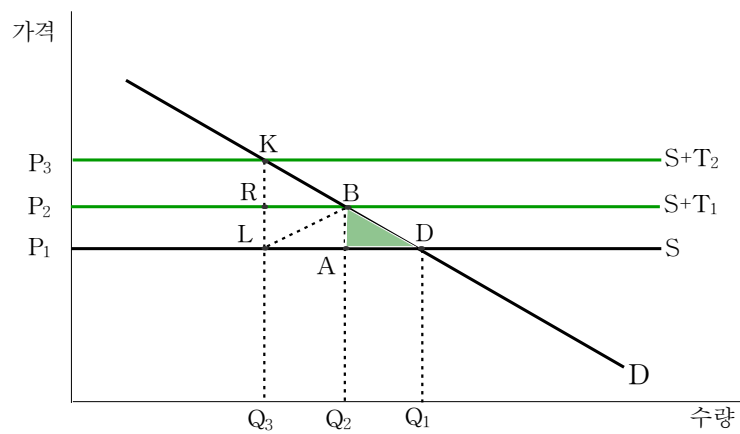
식에 따르면, 초과부담은 탄력성에 비례하며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의 반응이 민감할수록 가격교란이 크고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크므로 초과부담도 커지게 된다. 아래의 [그림 II-3]은 탄력성 크기에 따른 이러한 초과부담의 변화를 예시하고 있다.

[그림 II-3] 탄력성과 초과부담



세율이 클수록 가격변화 폭과 동시에 이로 인한 수요량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공에 비례하게 되는데, 다음의 [그림 II-4]는 세율변화의 크기에 따른 초과부담의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초과부담이 왜 세율의 제공의 크기에 비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II-4] 세율과 초과부담



조세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과부담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세수 단위당 초과부담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초과부담을 세수 크기로 나누면, 아래와 같은 식이 주어진다.

$$\frac{EB}{R} = 0.5\epsilon t \quad (2.2)$$

이를 보면 세율의 인상은 초과부담의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세수 단위당 초과부담의 크기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과세 베이스를 높이는 것이 초과부담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식의 간단한 응용을 통해 최적 상품세의 원리를 구할 수 있다. 최적조건하에서 모든 상품과세 품목의 초과부담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모든 품목에 $t_i^* = k/\epsilon_i$ 가 성립하는 램지의 법칙을 쉽게 보일 수 있다.

공급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공급탄력성, η)에 초과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보일 수 있다. 초과부담의 절대적 크기가 아래의 식에 의해 주어지면,

$$\begin{aligned} EB &= 0.5 \Delta P \cdot \Delta Q \\ &= \frac{0.5 t^2 PQ}{\frac{1}{\epsilon} + \frac{1}{\eta}} \end{aligned} \quad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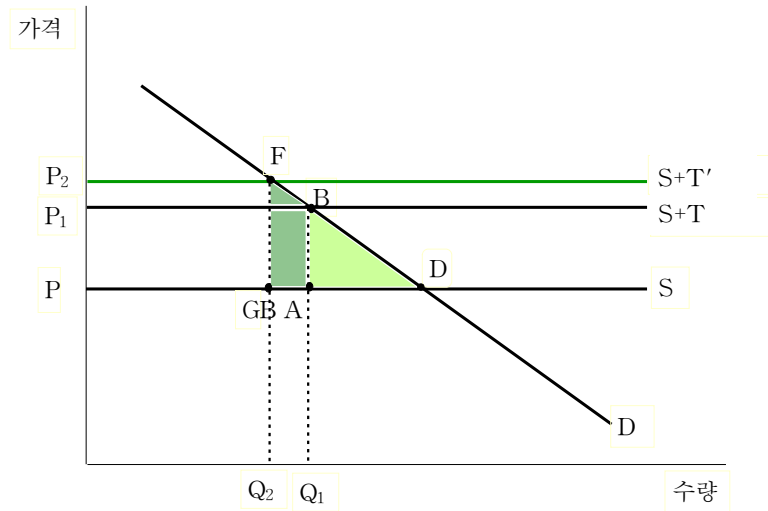
세수 단위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rac{EB}{R} = \frac{0.5t}{\frac{1}{\epsilon} + \frac{1}{\eta}} \quad (2.4)$$

라. 조세의 한계적 초과부담

초과부담의 측정 결과는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초과부담의 절대적 크기가 아닌 세제개편에 따른 초과부담의 한계적 변화이다. 현실에서는 이미 특정한 조세체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현 조세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초과부담의 크기가 기존의 그것에 비해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 II-5]에서 기존에 이미 조세가 부과되어 공급곡선이 $S+T$ 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균형점은 B 이며, 초과부담은 하버거의 삼각형 ADB 로 주어진다. 세율의 추가적 인상에 따라 공급곡선이 $S+T$ 로 상향이동하게 되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이제 삼각형 GDF 로 주어지므로, 세율 인상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사다리꼴 $GABF$ 의 면적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세수 단위당 한계적 초과부담은 세수 1단위를 증가시키는 조세 변화에 대해 초과부담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림 II-5]에 따르면 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의 크기는 사각형 $PGFP_2$ 와 $PABP_1$ 의 면적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초과부담의 증가분(사다리꼴 $GABF$)을 세수의 크기의 증가분으로 나누면, 세수 단위당 한계적 초과부담이 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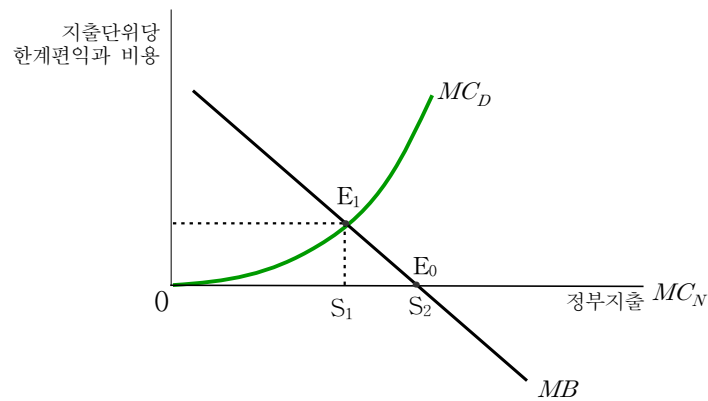
[그림 II-5] 세수 단위당 한계초과부담의 크기



끝으로 조세의 한계효율비용과 적정 정부지출 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수입원을 중립적 조세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조세로 충당하는 경우 정부의 적정 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중립적 조세의 한계적 효율비용(초과부담)은 세수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0이므로 한계적 효율비용곡선은 [그림 II-6]에서 X축 자체가 MC_N 으로 주어진다. 반면, 다음의 [그림 II-6]에서와 같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조세의 경우는 한계적 초과부담이 항상 양(+)의 값을 지니며, 세수 증가(세율 증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한계적 비용의 크기도 점차 증가하는 우상향의 한계적 효율비용 곡선(MC_D)을 지니게 된다. 만일 정부지출의 초과편익(총 편익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것)의 한계적 변화분이 그림의 MB 곡선으로 주어진다면, 정부지출을 중립적 조세로 충당하는 경우의 적정 정부지출 수준은 그림에서 MB 가 X축과 만나는 E_0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조세의 경우는

적정 정부지출은 MB 와 MC_D 가 교차하는 E_1 점에서 결정되어 중립적 조세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6] 한계초과부담과 적정 정부지출



2.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부분균형적 접근³⁾

부분균형 접근방법은 대규모의 일반균형 접근방법과 비교하여 분석이 매우 단순하나 주요 모수가 최종적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측정 문제는 자본소득(capital income) 과세에 비해 이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고 실증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부분균형 접근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owning(1985)은 노동공급 왜곡으로 인한 초과부담을 계산할 때 original Harberger(1964)의 방식이 초과부담을 과소추정하게 되는 문제를 보정함으로써 자신의 이전 연구(Browning, 1976)의 문제점을 보

3) 주요한 내용은 Browning(1976, 1987)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완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Browning(1985)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소득세의 효율비용 측정 방법론을 설명한다.

가. Browning(1976)의 주요 내용

Browning(1976)은 Harberger(1964) 방식의 추정치를 원용한 부분균형분석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1975년 기준 미국 근로소득세제의 한계적 초과부담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제의 누진도에 따라 세수 단위당 한계초과부담의 값이 0.08~0.16달러에 이르고 있다. Browning(1976)은 추정 과정에서 미국 세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나 평균세율은 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누진적 구조 설정에 따라 한계적 효율비용은 단순한 형태의 비례적 소득세의 경우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복수의 세금으로 사회보장급여세와 소득세 및 노동공급을 왜곡할 수 있는 기타 소득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조세의 한계비용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체계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유효한계세율과 각각의 한계유효세율에 대응하는 총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Browning(1976)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0.2)은 세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974년 기준 근로소득세의 효율비용을 각 세율구간에 대해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효율비용이 130억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4.1~4.6%에 해당한다. 여기에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전체 세수의 2~2.5%인 60억달러)을 더하면 근로소득세의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손실(190억달러, 전체 세수의 6.6%)을 계산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에 의거하여 세수 단위당 한계적 효율비용의 크기는

proportional tax, degressive tax, progressive tax system의 경우에 대해 각각 0.083, 0.134, 0.16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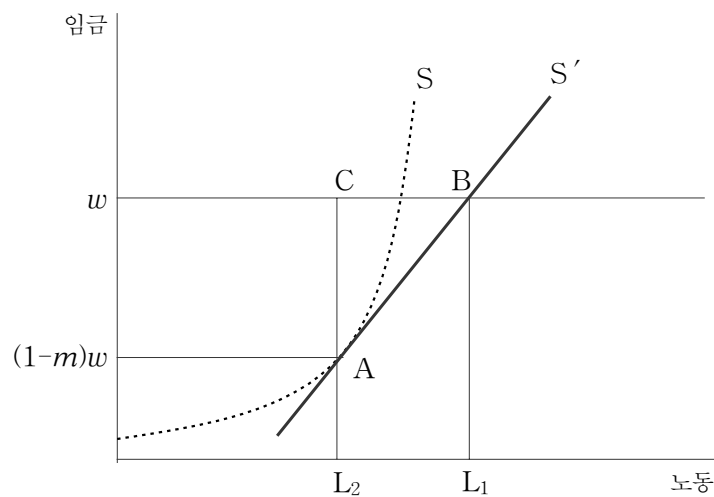
나. Browning(1987)의 주요 내용

Browning(1987)은 이전의 연구(Browning, 1976)에서 이용된 Harberger(1964)의 접근방법을 보완하면서, 보다 엄밀한 방법의 부분균형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 근로소득세의 세수 1단위당 한계적 초과부담이 이용 가능한 모수값에 따라 10~300% 사이의 매우 큰 범위에 위치함을 보였는데, 이는 주어진 자료로는 한계초과부담 추정치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Harberger(1964)의 분석 결과가 일반균형모형 분석과 차이가 나는 것은 부분균형 분석방법의 이론적 결점 때문이 아니라 분석에 이용된 주요 모수에 대한 상이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모수에 대한 약간의 변화는 한계초과부담 추정치에 있어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균형 접근방법을 이용하는 다른 연구와의 결과상 커다란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게 된다. 이하에서는 Browning(1987)에서 이용된 근로소득세의 효율비용 측정방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의 [그림 II-7]은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자주 이용된다. 여기에서 노동 한 단위당 근로자의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w 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즉 노동수요곡선은 수평임을 가정한다. 임금과 근로소득에 한계세율(m)이 부과되는 경우 세후 임금은 $w(1-m)$ 로 주어지게 된다. 세율 m 의 부과에 따른 보상노동공급곡선(compensated labor supply)을 S^* 로 나타낼 때, 노동공급은 세후 임금수준이 S^* (또는 S)와 교차하

는 A점에서 결정되어 세금부과 이전의 균형점(B)보다 줄어든다. 노동공급량이 L_1 에서 L_2 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노동공급의 사회적 한계편익(w)이 한계비용($w(1-m)$)을 초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의 초과부담의 크기는 Harbeger 삼각형 ACB 로 주어진다. 이는 한계세율이 0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기는 근로소득의 증가분(근로자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위치한다는 가정하에)에서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해 포기되는 여가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7] 노동공급과 초과부담



여기에서 노동공급 변화의 초과부담 측정에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보상노동공급곡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균형 분석과의 차이로는 부분균형 분석의 공통적인 특성상 노동공급의 변화 이후에도 세전 임금은 여전히 w 로 일정하다는 단순화 가정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일반균형 분석에서는 부분균형 접근방식과 달리

시장임금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간주한다.

보상노동공급곡선의 선형성 가정하에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노동공급의 보상 변화(d_L)는 보상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역수($\frac{d_L}{d_w}$)와 한계임금의 변화($d_w = wm$)의 곱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begin{aligned} EB &= 0.5 d_L dw \\ &= 0.5 d_L wm \\ &= 0.5 \left[\frac{d_L}{d_w} wm \right] wm \end{aligned} \quad (2.5)$$

양변에 $\frac{L_2(1-m)}{L_2(1-m)}$ 을 곱하면,

$$EB = 0.5 \left[\frac{d_L}{d_w} \frac{w(1-m)}{L_2} \right] \frac{m^2}{1-m} wL_2 \quad (2.6)$$

$\frac{d_L}{d_w} \frac{w(1-m)}{L_2}$ 가 보상수요곡선의 탄력성을 세후 임금수준(점 A)에서 평가한 값이라는 점에 주의하여 이 값을 η 라 하면, 초과부담은 아래와 주어진다.

$$EB = 0.5 \eta \left(\frac{m^2}{1-m} \right) wL_2 \quad (2.7)$$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Harberger의

공식은 이와 달리

$$EB = 0.5\eta m^2 wL \quad (2.8)$$

로 주어지고 있는데, 위 공식에서 보상공급탄력성과 노동소득의 수준을 변화 이전의 노동공급(점 B) 수준인 L_1 에서 평가한 값이라 설정하면, Harberger^식의 공식인 식 (2.8)은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올바르게 측정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노동공급량 L_1 의 값은 현실에서 관측 불가능하며, 실제로 추정을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는 조세 부과 시의 탄력성과 근로소득의 수준에 대한 추정치로 국한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 (2.7)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Browning(1976)은 초과부담 계산을 위해 Harberger의 원래 공식인 식 (2.8)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초과부담을 $(1-m)$ 배만큼 과소 추정하는 실수(Findlay and Jones, 1981 참고)가 있었던 데 반해, Browning(1987)에서는 식 (2.7)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실수를 보정하였다.

위 식 (2.8)을 초과부담 추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근로소득(aggregate labor earnings), 전체 근로자 그룹에 대해 가중평균한 보상노동공급탄력성, 그리고 전체 근로자 그룹에 대해 가중평균한 한계세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보상노동공급탄력성의 가중평균으로는 기존 연구에 따른 결과(약 0.2~0.3)를 활용하지만, 총 근로소득의 값을 정할 때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의 고용자 부담분, 특별수당(fringe benefits), 그리고 판매세(sales and excise taxes)와 같은 간접산출세(indirect output taxes)의 존재로 인해 신고임금소득을 그로스업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세전 노동보수를 포착해야만 한다. 가중평균 한계세율의 울

바른 측정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얻게 되는 순한계임금률을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이하로 감소하게 만드는 모든 조세와 이전지출의 통합효과를 포괄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계세율은 확장된 세전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응되어 측정되어야 한다. 확장된 소득베이스에 대응하는 각 세목의 한계유효세율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후 임금을 낮추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means-tested transfer program의 암묵적 한계세율(implicit marginal tax rate)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값들을 식 (2.7)에 대입하면, 미국(1984년 기준) 근로소득세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공급의 왜곡이 발생시키는 초과부담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치를 노동에 귀착되는 모든 세금으로부터 거두어지는 세수에 대비시켰을 때의 비율은 7.5%에서 28.5%까지의 다양한 값으로 주어지며, 두 개의 주요 모수 η 와 m 에 대한 약간의 변화는 초과부담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3.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일반균형적 접근

앞 절에서는 부분균형 접근방법을 통해 초과부담의 크기를 단순히 하버거의 삼각형을 이용해 표현했지만, 현실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초과부담을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각 재화나 요소시장 간에 존재하는 상호연관 작용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단점이 있어, 초과부담의 엄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균형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 분석은 대부분 일반균형모형의 관점에서 실제 경제를 근사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수의 방정식을 구성하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각 방정식의 계수를 추정하여, 조세제도 도입의 사회후생 변화를 컴퓨터 모의실험

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장점은 부분균형 분석과 달리 다수의 시장이 존재하는 여러 부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목 및 전체 조세제도의 한계적 효율비용(초과부담)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러한 CGE모형 분석이 부분균형 분석에 비해 개념적으로 우월할 수 있으나, 계산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주요 모수가 일관된 체계나 문헌자료에서 적합하게 채택되지 못할 경우, 모수 변화가 초래하는 분석 결과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특정 세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CGE모형의 복잡성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초과부담은 하버거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부분균형 분석방법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CGE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경우에는 정태적 CGE모형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동태적 CGE모형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한편, 이러한 일반균형 분석을 이용한 과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uart(1984)는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초과비용을 측정하였다. 이 모형은 우선 노동의 과세 유무에 따라 두 개의 산업을 설정하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분균형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고(예를 들어 임금은 내생적으로 결정), 또한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기에 주요 모수의 중요한 역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의 주요 결과는 1%포인트의 한계세율 인상 시, 세수 단위당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20~24%에 위치(benchmark case)하여 거의 같은 가정하에서 13%를 도출한 Browning(1975)과 대비된다. 그 외 다양한 전제(노동공급탄력성이나 Payroll tax 유무 등)하에서 한계효율 비용은 133%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는 미국경제에 대한 일반

균형분석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다부문 CGE모형의 계수를 캘리브레이션한 후, 모의실험을 통해 미국 조세체계의 세수 단위당 한계 초과부담이 15~50% 범위에 있음을 측정해 보였다. 이들이 분석한 세목들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완전한 이시점 간 동태적 모형이 아닌 단순한 축차적 형태의 모형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Fullerton and Henderson(1989)은 미국경제의 CGE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및 법인/비법인 부문별 분석뿐만 아니라 자산유형별 조세왜곡의 효과도 측정하였으며, 산업 및 부문별 왜곡 효과보다 오히려 자산유형별 조세왜곡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모형의 단순 캘리브레이션에 의한 효율비용 분석에서 더욱 나아가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직접 추정하고 조세의 효율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Jorgenson and Yun(1993, 2001), Diewert and Lawrence(1996, 2002) 등이 있다. Jorgenson and Yun(1993)은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된 미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초과부담이 다른 세목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Diewert and Lawrence(1996, 1998)는 소규모의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각 방정식의 계수를 뉴질랜드의 1972~1991년 사이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하여 추정한 후, 소득, 소비, 수입 등에 대한 세목별 효율성을 추정하고 역사적으로(historically) 평가하였다. 또한 Diewert and Lawrence(2002)는 그들의 이전 뉴질랜드에 관한 연구인 Diewert and Lawrence(1996)와 유사하게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주요 모수를 추정하고 호주의 자본과세의 효율비용을 부분균형적으로 계산하여 역사적으로 평가하였다. Jorgenson and Yun(2001)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1996년 미국 조세제도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하였다.

<표 II-1> 조세 효율비용의 추정: 기존 연구 결과

기존 연구	주요 특징	MEC 추정치
Browning(1976)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경제)	0.09~0.16(노동)
Hausman(1981, 1985)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184~0.221(노동)
Stuart(1984)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207(노동)
Hanson and Stuart(1985)	2부문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스웨덴)	0.69~1.29(노동)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1973, 미국)	0.33(조세시스템 전반) 0.23(노동) 0.46(자본)
OECD(1997)	문헌조사	0.56(개인소득) 0.17(소비) 1.55(법인소득)
Diewert and Lawrence(1996)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자본과세 제외, 1972~1991, 뉴질랜드)	0.083(소비) 0.026(수입) 0.095(노동) -0.025(자동차)
김성태 외(1999)	BFSW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1993, 한국)	0.42(부가세) 1.03(소득세) 1.86(물품세)
Diewert and Lawrence(2002)	부분균형모형(자본과세, 1967~1997, 호주)	0.262(법인) 0.402(재산)
Jorgenson and Yun(2001)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1996, 미국)	0.404(노동) 0.266(조세시스템 전반)

주: 1. 한계효율비용(MEC) 추정치는 자국 화폐단위로 평가한 세수 1단위당 한계초과부담액임.

2. Diewert and Lawrence(1996, 2001)의 경우는 분석기간내 표본평균(sample average)임.

한편, 이러한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추정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김성태 외(1999)는 미국 Ballard et al.(1985)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한 KOCGE모형을 이용하여 세계개편의 한계효율비용을 측정하였으나, 분석모형의 각종 매개변수의 신뢰

성 확보를 위한 한국경제의 실증자료에 기반하는 모형추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외 윤건영·김종웅(1995)은 Jorgenson and Yun(1993)의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소득 관련 세제의 효율비용을 계산하여 부분적으로나마(단순 소비자 행태 부문) 우리나라에 적용한 실증적 일반균형 연구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계량 경제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이라기보다는 관련 방법론의 소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한계초과부담을 주요 세목에 따라 부분균형 접근방법과 일반균형 접근방법 모두를 혼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 이용되는 일반균형 분석방법은 기존의 단순 모형 캘리브레이션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 CGE모형에 비교하여 다소 단순화된 구조를 가지지만, Jorgenson and Yun(1993)이나 Diewert and Lawrence(1996, 2002)에서와 같이 과거의 역사적 실증자료(empirical data)에 근거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하여 모형을 직접 추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본과세(법인세 포함) 이외의 소비세, 관세, 노동과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한계초과부담은 모두 일반균형모형 분석방법에 의해 추정하여 서로 비교한다. 그리고 법인세 등 자본과세의 경우는 위에서와 같이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한 일반균형적 모수추정에 근거하지만, 자본시장의 변화 및 이시점 간 동태적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일반균형모형의 추정이라는 복잡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법인세의 초과부담은 자본시장의 생산자부문에 중심을 두는 부분균형적 접근에 기초하여 보완적으로 측정한다.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1.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및 특징

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그림 Ⅲ-1]과 같이 과세주체에 따라 15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내국세, 관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되며, 이 중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세분된다. 국세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이며, 2005년부터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복리에 쓰여지는 조세로, 이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특별시·광역시세와 구세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보면, 총 조세수입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주로 국세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90%에 이르던 국세 비중이 1988년 말 담배소비세의 신설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이 약 81:19로 바뀌었다. 특히 국세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장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컸으며, 지방세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도입된 주행세와 지방교육세에 힘입어 이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세수가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43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 III-1>의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전체 조세수입 163조 4,431억원 중 국세 및 지방세의 규모는 각각 127조 4,657억원과 지방세 35조 9,774억원으로 78%와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1>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의 비중(1970~2005)

(단위: %)

	'70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국세	91.7	89.8	88.3	87.8	80.8	78.8	81.9	78.2	76.7	77.6	77.5	78.1
지방세	8.3	10.2	11.7	12.2	19.2	21.2	18.1	21.8	23.3	22.4	22.5	21.9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재경부, 『조세개요』, 각 연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에서 차지하는 직·간접세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세수는 직접세보다는 소비세를 위주로 하는 간접세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간접세 비중이 감소하고 직접세 비중이 점점 커져서 직접세와 간접세 세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오히려 직접세 비중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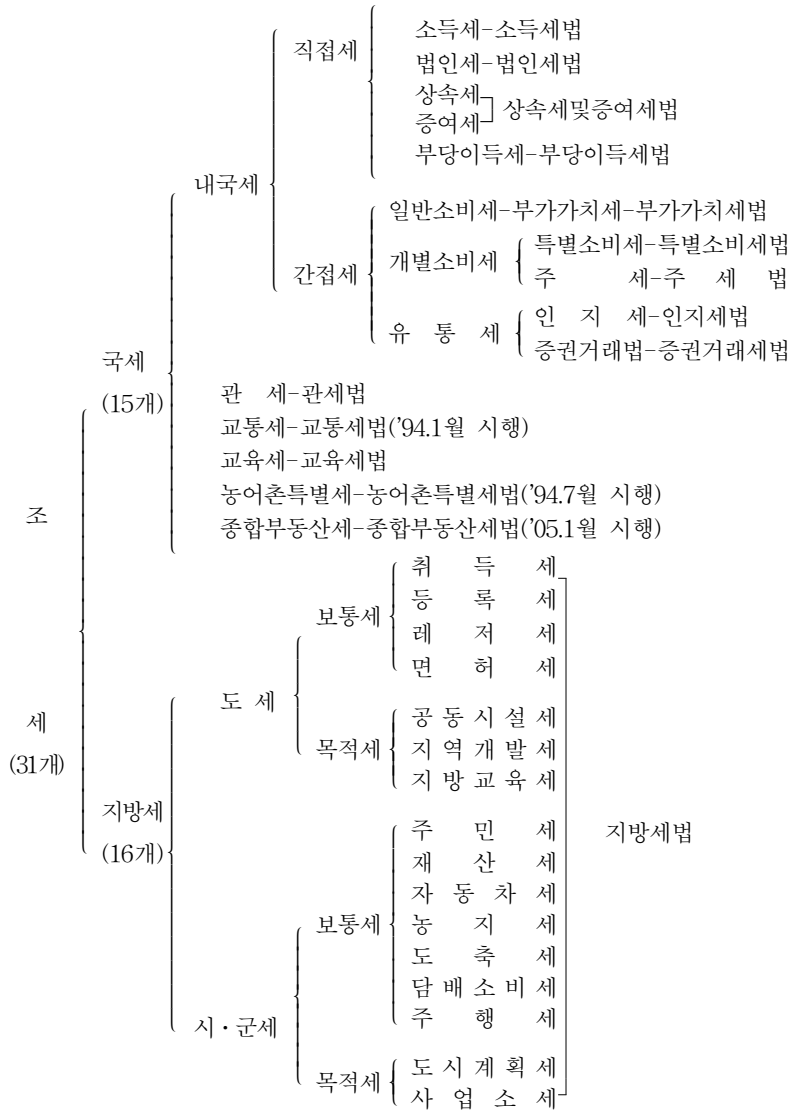
<표 III-2> 우리나라의 직·간접세의 비중(1970~2005)

(단위: %)

	'70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직접세	43.5	39.5	36.9	39.3	49.5	54.7	51.2	50.3	50.6	53.1	53.6	55.2
간접세	56.5	60.5	63.1	60.7	50.5	45.3	48.8	49.7	49.4	46.9	46.4	44.8

자료: 재경부, 『조세개요』, 각 연도

[그림 III-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주: 1. 토지초과이득세는 '98.12.28 폐지, 자산재평가세는 '00.12.31 폐지, 전환세는 '01.9.1 폐지
 2. 2001.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
 3. 2005. 1. 1 종합토지세 폐지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표 III-3>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규모 및 조세부담률 추이(1970~200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 세	금액	3,981	15,498	65,754	135,314	332,148	720,905	1,224,577	1,354,935	1,477,971	1,519,974	1,634,431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 세	금액	3,347	12,555	52,977	110,474	268,474	567,745	929,347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7
	구성비	84.1	81.0	80.6	81.6	80.8	78.8	81.9	78.2	76.7	77.6	77.5
내 국 세	금액	2,838	10,123	36,758	74,969	191,302	443,820	711,061	822,259	922,311	952,764	1,044,279
	구성비	71.3	65.3	55.9	55.4	57.6	61.6	62.6	60.5	60.7	62.4	62.7
교 통 세	금액						33,718	84,036	94,793	100,005	100,651	102,878
	구성비						4.7	7.4	7.0	6.8	6.6	6.3
관 세	금액	509	1,810	7,661	15,661	27,654	46,332	59,234	66,013	68,473	67,965	63,177
	구성비	12.8	11.7	11.7	11.6	8.3	6.4	5.1	4.8	4.9	4.6	4.5
방 위 세	금액	-	622	8,558	16,632	44,306	631	-29	8	21	571	-86
	구성비		4.0	13.0	12.3	13.3	0.1					
교 육 세	금액				3,211	5,213	29,931	57,983	37,825	36,513	35,295	35,266
	구성비				2.4	1.6	4.2	5.1	3.1	2.6	2.3	2.2
농·어·축·산·림·세	금액						13,313	18,299	15,256	19,317	20,711	24,730
	구성비						1.8	1.2	32.2	1.3	1.4	1.5
전매익금	금액	301	1,355	5,100	8,290							
	구성비	7.6	8.7	7.8	6.1							
지 방 세	금액	332	1,588	7,677	16,549	63,674	153,160	266,649	315,257	331,329	342,017	359,774
	구성비	8.3	10.2	11.7	12.2	19.2	21.2	18.1	21.8	23.3	22.4	22.5
총 조세부담률	GDP (억원)	27,252	102,281	377,885	813,123	1,787,968	3,773,498	6,221,226	6,842,635	7,246,749	7,784,446	8,066,219
	총 조세부담률	14.6	15.2	17.4	16.6	18.6	19.1	19.6	19.7	19.8	20.5	20.3
국세부담률	금액	13.4	13.6	15.4	14.6	15.0	16.1	15.4	15.2	15.9	15.1	15.9
	구성비	1.2	1.6	2.0	2.0	3.6	4.1	3.6	4.3	4.6	4.4	4.5

주: GDP는 2000년 이후에는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95 → '00) 후 수치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소비세 및 재산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득세와 재산세의 비중은 점차 증대하는 반면 소비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세의 세율이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1985년 26.4%에서 1990년 34.6%로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재산세도 1985년 9.1%에서 1990년 12.4%로 다소 증가한 반면, 소비세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의 조세 비중
(단위: 십억원,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GDP	10,228	37,789	81,312	178,797	377,350	578,665	778,445	806,622
총조세	1,565	6,687	13,766	35,303	77,526	136,358	191,781	206,847
소득세								
GDP 대비 비중	3.7	4.4	4.3	6.5	6.2	6.8	6.9	7.5
총조세 대비 비중	24.3	25.5	26.4	34.6	31.9	28.8	27.9	29.3
소비세								
GDP 대비 비중	9.2	10.8	9.7	8.8	8.4	9.0	8.9	8.8
총조세 대비 비중	61.1	62.7	59.5	46.7	43.1	38.3	36.3	34.3
재산세								
GDP 대비 비중	1.5	1.4	1.5	2.4	2.9	2.9	2.8	3.0
총조세 대비 비중	9.7	8.0	9.1	12.4	14.8	12.4	11.3	11.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나. 소득세제

1) 개인소득세제의 변화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등 장기형성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시재산 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체적인 소득유형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도 시행하고 있다.

1982년 종합소득 세율체계는 과세표준 12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17개 구간에 대하여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분화되어 있었다. 1983년에는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16개로 축소하였다. 1989년에는 복잡했던 과세표준 구간을 8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50%로 인하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또다시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축소하였고 1994년에는 세율을 인하하여 최고세율이 4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96년에는 지금과 같은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세율을 조정하며,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시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금액이 8,000만원에 도달하였다. 이후 과세표준의 조정 없이 2002년에는 세율을 10% 인하하였고 2005년에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분류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가 차감된 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차감할 수

4) 일부 내용은 성명재·김우철(2007) 참조

있는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체계에는 필요경비 차감 성격을 지닌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한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5>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1982	1983~1988	1989~1990
* 17단계(6~60%) 120만원 이하 : 6% 120만원~180만원: 7만 2천원 + 7% 180만원~240만원: 11만 4천원 + 8% 240만원~300만원: 16만 2천원 + 10% 300만원~390만원: 22만 2천원 + 12% 390만원~480만원: 33만원 + 15% 480만원~600만원: 46만 5천원 + 18% 600만원~840만원: 68만 1천원 + 22% 840만원~1,140만원: 120만 9천원 + 26% 1,140만원~1,500만원: 198만 9천원 + 30% 1,500만원~1,900만원: 306만 9천원 + 34% 1,900만원~2,400만원: 442만 9천원 + 38% 2,400만원~3,000만원: 632만 9천원 + 42% 3,000만원~3,800만원: 884만 9천원 + 48% 3,800만원~4,800만원: 1,252만 9천원 + 50% 4,800만원~6,000만원: 1,752만 9천원 + 55% 6000만원 초과: 2,412만 9천원 + 60%	* 16단계(6~55%) 180만원 이하 : 6% 180만원~250만원: 10만 8천원 + 8% 250만원~350만원: 16만 4천원 + 10% 350만원~480만원: 26만 4천원 + 12% 480만원~630만원: 42만원 + 15% 630만원~800만원: 64만 5천원 + 18% 800만원~1,000만원: 95만 1천원 + 21% 1,000만원~1,250만원: 137만 1천원 + 24% 1,250만원~1,550만원: 197만 1천원 + 27% 1,550만원~1,900만원: 278만 1천원 + 31% 1,900만원~2,300만원: 386만 6천원 + 35% 2,300만원~2,900만원: 526만 6천원 + 39% 2,900만원~3,700만원: 760만 6천원 + 43% 3,700만원~4,700만원: 1,104만 6천원 + 47% 4,700만원~6,000만원: 1,574만 6천원 + 51% 6,000만원 초과: 2,237만 6천원 + 55%	* 8단계(5~50%) 250만원 이하: 5% 250만원~500만원: 12만 5천원 + 10% 500만원~800만원: 37만 5천원 + 15% 800만원~1,200만원: 82만 5천원 + 20% 1,200만원~1,700만원: 162만 5천원 + 25% 1,700만원~2,300만원: 287만 5천원 + 30% 2,300만원~5,000만원: 467만 5천원 + 40% 5,000만원 초과: 1,547만 5천원 + 50%

<표 III-5>의 계속

1991~1992	1993	1994~1995
* 5단계(5~50%) 400만원 이하 : 5% 400만~1,000만원: 20만원 + 16% 1,000만~2,500만원: 116만원 + 27% 2,500만~5,000만원: 521만원 + 38% 5,000만원 초과: 1,471만원 + 50%	* 6단계(5~50%) 400만원 이하: 5% 400만~800만원: 20만원 + 10% 800만~1,600만원: 60만원 + 20% 1,600만~3,200만원: 220만원 + 30% 3,200만~6,400만원: 700만원 + 40% 6,400만원 초과: 1,980만원 + 50%	* 6단계(5~45%) 400만원 이하: 5% 400만~800만원: 20만원 + 9% 800만~1,600만원: 56만원 + 18% 1,600만~3,200만원: 200만원 + 27% 3,200만~6,400만원: 632만원 + 36% 6,400만원 초과: 1,784만원 + 45%
1996~2001 * 4단계(10~40%) 1000만원 이하: 10% 1,000만~4,000만원: 100만원 + 20% 4,000만~8,000만원: 700만원 + 30% 8,000만원 초과: 1,900만원 + 40%	2002~2004 * 4단계(9~36%)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90만원 + 18% 4,000만~8,000만원: 630만원 + 27% 8,000만원 초과: 1,710만원 + 36%	2005 * 4단계(8~35%)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80만원 + 17% 4,000만~8,000만원: 590만원 + 26% 8,000만원 초과: 1,630만원 + 35%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51

2000년 이전에는 공제한도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일정액까지만 공제를 허용했으며, 복잡했던 세율체계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소득구간 구분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에는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소득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에는 5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하며, 최고 4,5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표 III-6> 근로소득공제의 변천

(단위: 만원)

	1982	1983~1988	1989~1990	1991~1992	1993
구간별 공제율	88 이하: 전액 88~300: 20% 300~ : 10%	94 이하: 전액 94~300: 20% 300~ : 10%	140 이하: 전액 140~400: 25% 400~ : 15%	230 이하: 전액 230~ : 30%	250 이하: 전액 250~ : 30%
공제한도 (상한)	170	170	230	490	600
	1994	1995	1996	1997~1998	1999~2000
구간별 공제율	270 이하: 전액 270~ : 30%	310 이하: 전액 310~ : 30%	~400: 전액 400~ : 30%	~500: 전액 500~ : 30%	~ 500: 전액 500~1500: 40% 1500~ : 10%
공제한도 (상한)	620	690	800	900	1200
	2001		2002~2003.7		2003.7~현재
구간별 공제율	~500: 전액 500~1500: 40% 1500~4500: 10% 4500~ : 5%		~500: 전액 500~1500: 45%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500: 전액 500~1500: 50%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공제한도 (상한)	없음		없음		없음

주: 2003년 7월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500만~1,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됨. 경과조치로 2003년 소득은 공제율을 1000분의 475로 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공제는 모든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특별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제도의 변천은 <표 III-7>에 정리되어 있다. 인적공제제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장애인, 경로우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해 주었다. 1990년에 접어들며 부녀자세대주 추가공제가 신설되고, 1996년에는 핵가족화에 따라 소수자 추가공제가 도입되는 등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표 III-7>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982~1988	1989~1990	1991~1992	1993	1994	1995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1인당 30만원) · 배우자공제 (1인당 42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1인당 48만원) ·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1인당 48만원) ·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1인당 60만원) ·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1인당 72만원) ·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1인당 72만원) · 배우자공제 (1인당 54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공제 (1인당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공제 (1인당 48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당 3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공제 (1인당 48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 · 부녀자세대주공제 (1인당 5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공제 (1인당 48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 · 부녀자세대주공제 (1인당 5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공제 (1인당 48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 · 부녀자세대주공제 (1인당 5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공제 (1인당 54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 · 부녀자세대주공제 (1인당 5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공제 (1인당 54만원) · 경로우대공제 (1인당 48만원) · 부녀자세대주공제 (1인당 54만원)

<표 III-7>의 계속

	1996~2001	2002~2003	2004	2005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대상: ①본인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인자) ④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100만원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100만원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100만원 ·대상: ①당해거주자 ②배우자 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④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공제	1인당 50만원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① 장애인 ② 경로자(65세 이상) ③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근로소득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단, ①, ②의 경우, 100만원)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② 장애인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단 ①의 경우 7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50만원, ③의 경우에는 50만원)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② 장애인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① 경로자(65세 이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② 장애인(1인당 200만원)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1인당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1인당 100만원)
소수자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96.8.14 신설)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55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과 추이는 <표 III-8>에 요약되어 있다. 1975년 16개였던 과세표준 구간은 점차 축소되어 2005년에는 4개

<표 III-8>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추이
(단위: 개,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수	최저세율	최고세율
1975	16	8	70
1976	16	8	70
1977	16	8	70
1978	16	8	70
1979	16	8	70
1980	17	6	62
1981	17	6	62
1982	17	6	60
1983	16	6	55
1984	16	6	55
1985	16	6	55
1986	16	6	55
1987	16	6	55
1988	16	6	55
1989	8	5	50
1990	8	5	50
1991	5	5	50
1992	5	5	50
1993	6	5	50
1994	6	5	45
1995	6	5	45
1996	4	10	40
1997	4	10	40
1998	4	10	40
1999	4	10	40
2000	4	10	40
2001	4	10	40
2002	4	9	36
2003	4	9	36
2004	4	9	36
2005	4	8	35

자료: 재무부(1979), 재정경제원 내부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구간으로 단순화되었다.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은 8%에서 5%까지 인하하던 추세에서 1996년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10%로 인상되었다. 최고세율은 1975년 7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인하여 2005년에는 절반인 35%가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은 1996년 이후 기준금액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으나, 과거 세율 인하나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5년도 소득세수는 24.6조원으로 2005년 전체 국세 수입(127.5조원)의 19.3%, 내국세 수입(101.8조원)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납세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과세 미달자에 해당하는데, 2004년 귀속소득 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46.1%, 근로자의 경우 47.5%가 과세 미달로 추정된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근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공제 허용으로 중간소득 이하의 대부분이 면세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율의 누진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높은 면세점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생산직 평균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5년 1인가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7%로 영국의 17.4%, 미국 15.7%, 독일 20.9%, 일본 6.6%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에 있다. 가구규모에 따른 세부담을 보면 개인단위 소득과세 및 높은 소득공제의 특성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가 소수 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소득 수준이 1인가구의 경우 2.4배인 데 비해 4인가구는 1.1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57

<표 III-9>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

(단위: 배)

	1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한국(2006)	2.40	1.13	1.05
미국(2004)	0.84	1.15	1.12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장기 세제개편』, 2006

소득세 과세기반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소득과약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계정과 국세청 신고소득의 비율로 정의한 소득과약 비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85%, 사업소득은 57%로 사업소득의 소득과약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10> 국민계정 대비 소득과약 비율(2004년 귀속)

(단위: 조원, %)

구 분	국민계정 (A)	신고소득 (B)	비율 (B/A)	비고 (소득차이 원인)
근로소득(피용자보수)	305	260	85	일용 근로소득 미과약
사업소득(영업이익)	77	44	57	현금거래분 미과약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조세연구원 『중장기 세제개편』, 2006

2) 법인세제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법인세가 독립세목으로 도입된 이후, 법인세제는 경제발전 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변천을 거쳤다. 대표적인 세제개편을 살펴보면, 1963년 법정세율을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편하였고, 1969년에는 성실신고 유도 및 자진납세 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다. 1974년에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특별부가세제도⁵⁾가 정립되었다. 1980년대에는 성실신고법인제도를 폐지하고, 1982년에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 관할세무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

5) 2002년 세제개편에서 폐지

액을 계산하고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1990년에는 일반, 비상장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법정세율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표 III-11>은 과거의 세제 변화를 세율구조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세율 단계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우대 차원에서 실시된 다단계의 누진세율(최고 5단계)은 1970년대 중반 이후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2년 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법인세율을 일반법인(비공개), 공개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용했으며, 기업 공개의 장려라는 목적하에 공개법인에 차등과세하였다. 1982년 세법 개정 이후에는 공개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법인의 목적상 구분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차별화하여 과세했고, 특히 공공법인을 우대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인세율 적용은 1990년과 1997년에 이르러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단순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45%까지 이르렀던 최고 한계세율은 1970년대에도 방위세 등의 부가로 인해 한동안 지속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25%로 낮아졌다. 세율구간과 관련해서는 1971년에 공개법인에 대해 1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3단계 세율(16%, 20%, 27%)을 적용한 것을 1974년부터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 2단계 세율구조(20%, 27%)로 단순화했고, 1980년에 이르러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세율을 25%와 33%로 인상하였다. 이후 2단계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1982년에 20%, 27%가 되었다. 2단계 세율의 기준점은 1988년에 8천만원으로 조정된 후, 1990년도에 이르러 1억원으로 재차 상향되면서 20%와 34%의 세율로 부과되었다. 이후 세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현재(2005년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1억원 미만에 대해서 13%의 낮은 세율이,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59

<표 III-11> 법인세율의 변화

	일반(중소)법인	공개(상장)법인	비영리(학교)법인
1971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100만원 이하 16% 1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35%
1974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975	동일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15)% 500만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500만원 초과 40(35)%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5)%	동일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 (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이상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이상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이상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2001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1997 및 보도자료.

이상의 세율구조 변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과거 법인세제 변화는 대상 구분과 세율 적용의 단순화라는 원칙과 명목세율의 점진적인 인하라는 과정으로 압축된다. 법정세율은 법인 관련 조세감면의 영향이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과는 차이가 나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명목세율의 인하는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목세율은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의 법인 세부담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조세감면은 그 성격에 따라 투자 관련, 사업구조 조정 관련, 지방이전 관련 및 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I-12> 참조).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감면제도의 전체적인 변화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 감면액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신고세액의 증가와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1997년 1.5조원 규모였으나 2005년에는 6.8조원 규모로 약 4.5배 증가했으며, 법인세 신고세액은 1997년 7조원 규모였으나 2005년에는 26조원의 규모로 약 3.7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이 제조업에 치우쳐 있었으나, 이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감면율을 살펴보면 거의 일정하거나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임시투자세액공제: 15%→1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40%,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5%→3% 대기업). 이하에서는 법인세 감면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주요 변화 내용을 서술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 1998년도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10%의 공제율로 적용되기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61

시작했으며, 감면액 규모는 약 600억원이었으며,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수준으로 활용도는 낮았었다.

- 1999년에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을 포함한 21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 2003년 하반기에는 공제율을 15%로 인상했으며, 1.3조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약 23%)을 차지하게 되었다.
- 2005년도에는 공제율을 다시 10%로 인하했지만 공제 적용대상 자산을 확대했으며, 2.5조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3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997년도 현재 제조업과 광업을 대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5%(중소기업은 15%) 가운데 선택 적용이 가능하였다. 약 3천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당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19.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2001년에는 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단,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제외)하고 귀속시기를 지급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였다.
- 2003년도 감면액 규모는 1.1조원에 이르렀으나,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비중보다는 작아 순위가 역전되었다.
- 2003년도에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한도를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로 하향 조정된 후

2004년과 2005년에는 감면액과 그 비중이 각각 0.94조원(16.5%), 0.97조원(14.3%)으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1997년 현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5개 업종에 대하여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어, 약 1,500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10.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2001년에는 대상 업종에 건설업 외 9개 업종을 더 포함시키고, 수도권외 중소기업은 30%로 감면폭을 확대하였다.
- 2002년에는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며 7,000억원 규모의 감면액으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2004년도에는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켰으나, 2005년도에 다시 감면율을 다시 인상하여 15%~30%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05년도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판단기준을 본점 소재지에서 공장과 본점이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면액의 규모가 0.9조원(03년), 0.66조원(04년), 0.35조원(05년)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7년에는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해주어 각각 900억원과 1,000억원의 감면규모로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6.1%와 6.9%의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2001년도에 공제율을 3%(중소기업 7%)로 인하한 이후 활용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63

도가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도에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300억원 규모, 환경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1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 중복적용의 배제 및 수도권 적용 배제

- 2001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포함되어 다른 감면 및 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수도권 내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2002년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고 2004년도에는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였다.

<표 III-12> 법인 관련 조세감면

구분	지원내용	해당 조문
투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 임시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투자세액 공제 ○ 투자세액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 24조 조특 25조 조특 25조의2 조특 28조 ① 조특 26조 조특 11조 ① 조특 25조 조특 94조 조특 144조
재무구조개선 및 사업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신설법인 등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 현물출자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재산 취득·등록세 면제 -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 7조의2 조특 47조 조특 38조 조특 32조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본사 수도권지역 외 지역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특별세액 감면(과밀억제권역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 - 감가상각자산 취득, 특별부가세 50%감면 - 양도차익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농공단지입주기업 법인세 50% 감면 ○ 제주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 63 조특 64 조특 121의8 ① 조특 121의9 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법인세 50% 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 해외과건비에 대한 일시세액공제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 30조의2 조특 30조의3 조특 30조의4 조특 10조의2 조특 12조 ②

자료: 박기백·김진(2004)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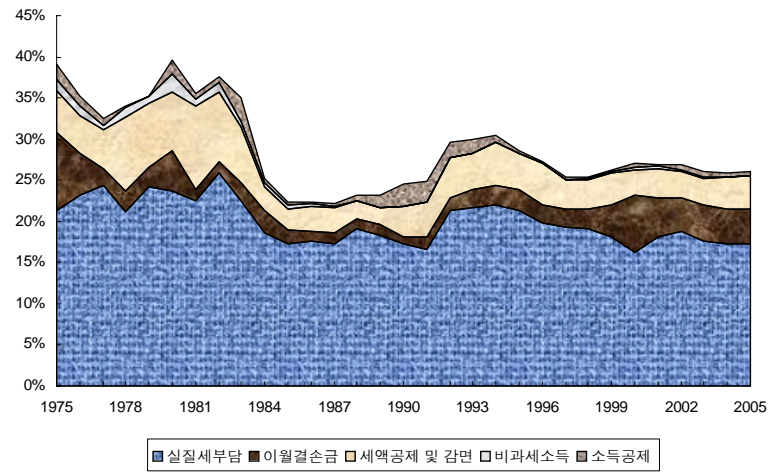
국세청의 사업연도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미시적인 기준의 법인세의 평균 세부담은 법인세액의 산출방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B = [(1 - L - N - D) \times \tau^*] - E$$

여기에서, TB = 법인세 신고액/사업연도소득, L = 이월결손금/사업연도소득, N = 비과세소득/사업연도소득, D = 소득공제/사업연도소득, τ^* = 평균명목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E = 감면 및 공제세액/사업연도소득으로 정의된다.

법인세제는 현재 2단계 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 전체의 평균적인 명목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란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뒤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소득의 대상으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공익신탁재산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정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이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배당처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정 소득공제가 있다. 전자의 일례인 기관투자가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약 3,226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으로는 법인세법상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에 3종의 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등 4개 항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2] 각 제도의 효과 비교: 평균 명목세율의 분해



다음 <표 III-13>은 1997년 이후 주요 법인세 감면제도의 실적 변화를 조세지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67

<표 III-13> 법인세 감면 제도의 실적 변화

(단위: 억원, %)

순위	1997년			1998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48	19.23	기부금의 손금산입	3,663	19.57
2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2,386	15.5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010	10.74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80	13.5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999	10.68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561	10.1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929	10.30
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1,056	6.8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254	6.70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941	6.13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928	4.96
7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03	5.24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871	4.65
8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474	3.09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837	4.47
9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463	3.0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809	4.32
1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457	2.98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685	3.66
	상위 10위 계	13,168	85.88	상위 10위 계	14,985	80.04
	상위 10위 외 계	2,166	14.12	상위 10위 외 계	3,737	19.96
	법인세감면총액	15,334	58.46	법인세감면총액	18,722	24.22
	조세지출총액	26,228		조세지출총액	77,306	

<표 III-13>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1999년			2000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520	12.8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890	19.03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2,025	10.29	기부금의 손금산입	4,417	12.20
3	기부금의 손금산입	1,891	9.61	임시투자세액공제	4,388	12.12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671	8.4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787	10.46
5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335	6.78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2,890	7.98
6	농협 등 조합법인 법 인세 과세특례	1,255	6.38	학교법인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손금산입	1,409	3.89
7	임시투자세액공제	1,153	5.86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	1,386	3.83
8	학교법인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손금산입	993	5.05	기관투자자 상장등록 법인 배당 익금 불산 입	1,264	3.49
9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935	4.75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1,141	3.15
10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793	4.03	연구 및 인력개발준 비금의 손금산입	1,115	3.08
	상위 10위 계	14,571	74.04	상위 10위 계	28,687	79.22
	상위 10위 외 계	5,108	25.96	상위 10위 외 계	7,523	20.78
	법인세감면총액	19,679	18.67	법인세감면총액	36,210	27.26
	조세지출총액	105,419		조세지출총액	132,824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69

<표 III-13>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2001년			2002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7,025	16.3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234	17.37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426	14.97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867	16.49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4,717	10.99	임시투자세액공제	6,528	15.68
4	기부금의 손금산입	4,270	9.95	기부금의 손금산입	3,551	8.53
5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077	9.50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	2,009	4.82
6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 인 배당 익금 불산입	2,818	6.57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972	4.74
7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	2,414	5.62	기관투자자 상장등록 법인 배당 익금 불산 입	1,761	4.23
8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1,946	4.5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362	3.27
9	공공차관도입 세액감면	1,208	2.8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137	2.73
1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080	2.52	농협 등 조합법인 법 인세 과세특례	1,063	2.55
	상위 10위 계	35,981	83.83	상위 10위 계	33,484	80.41
	상위 10위 외 계	6,943	16.17	상위 10위 외 계	8,157	19.59
	법인세감면총액	42,924	31.26	법인세감면총액	41,641	28.28
	조세지출총액	137,297		조세지출총액	147,245	

<표 III-13>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2003년			2004년		
	항목	실적	비중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13,019	23.37	임시투자세액공제	17,806	31.27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597	20.8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423	16.55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094	16.3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617	11.62
4	기부금의 손금산입	4,083	7.33	기부금의 손금산입	4,530	7.96
5	학교법인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손금산입	2,101	3.77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	3,490	6.13
6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	1,798	3.23	기관투자자 상장등록 법인 배당 익금 불 산입	2,235	3.93
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547	2.78	농협 등 조합법인 법 인세 과세특례	1,857	3.26
8	기관투자자 상장등록 법인 배당 익금 불 산입	1,506	2.7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755	3.08
9	농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1,505	2.7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309	2.30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 선을 위한 세액공제	1,269	2.28	기업의 어음제도 개 선을 위한 세액공제	1,036	1.82
	상위 10위 계	47,519	85.31	상위 10위 계	50,058	87.91
	상위 10위 외 계	8,185	14.69	상위 10위 외 계	6,883	12.09
	법인세감면총액	55,704	31.82	법인세감면총액	56,941	31.14
	조세지출총액	175,080		조세지출총액	182,861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71

<표 III-13>의 계속

(단위: 억원, %)

순위	2005년		
	항목	실적	비중
1	임시투자세액공제	24,577	35.94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754	14.26
3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5,446	7.96
4	기부금의 손급산입	5,295	7.74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542	5.18
6	기관투자자 상장등록법인 배당 익금 불산입	3,226	4.72
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242	3.28
8	농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2,136	3.12
9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906	2.79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258	1.84
	상위 10위 계	59,382	86.84
	상위 10위 외 계	8,997	13.16
	법인세감면총액	68,379	34.16
	조세지출총액	200,169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 보고서』, 각 연도.

다. 소비세제

우리나라는 1950년 전후에 도입된 영업세, 물품세, 직물세, 주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등 여러 종류의 소비세에 대해 1977년 7월 1일 기준으로 복잡하던 세목을 폐지하고 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즉, 영업세는 부가가치세로 개편하고 기타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통합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소비세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89년에 농지세 수입의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해 담배판매세를 도입하였으며, 1980년대 말 이후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및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1994년에 교통세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77년 소비세 체계의 개편으로,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되며, 일반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있으며,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 또는 제공과 물품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13%의 단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경기조절 목적으로 3%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운영하였는데, 1988년 이후에는 기본세율을 13%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과 일반면제라는 면세조항을 두어 특정부문이나 물품 등에 대해서 면세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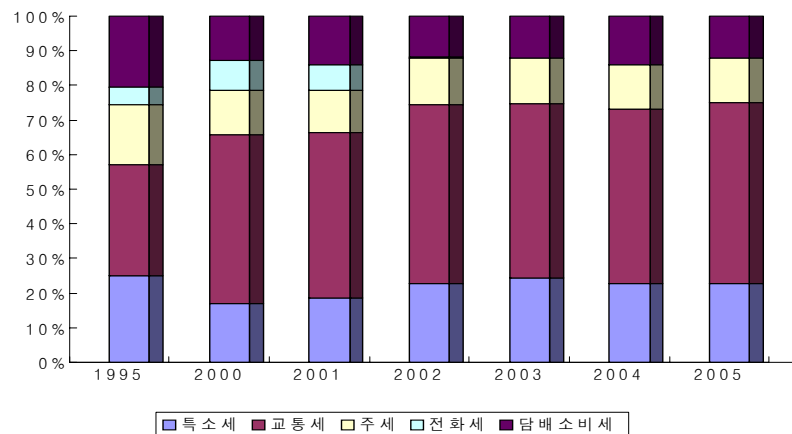
그리고 특별소비세는 도입 당시의 과세대상으로는 보석, 냉장고, 세탁기, TV, 커피, 휘발유, 골프장 등 29개 품목이 해당되었으나, 이후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소폭 조정을 하였으나 큰 변화 없이 현재는 35개 물품과 6개의 장소가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물품에 대한 과세는 종량세와 증가세로 과세되며 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의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소의 경우 증가세와 정액세로 과세하고 있다.

교통세는 1994년 목적세의 하나로 도입된 세목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994~1995년에 특별소비세와 같이 증가세 체계였으나, 1996년 1월부터 종량세 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유류 간 세율 격차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완화, 환경오염 감축 등의 이유로 2000년 말에 교통세와 특수세가 대폭 개편되었다. 그래서 교통세 세수입이 2002년 이후에는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73

하고 있다. 그리고 1949년 주세법의 제정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주세는 알콜함량 1% 이상의 모든 주류에 대해서 과세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부과하고 있다.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방식으로 과세되었으며, 1967년 말과 1971년 말 세법개정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제품에 대해 종가세로 과세하는 과세체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I-3] 개별소비세의 세목별 비중



〈표 III-14〉 개별소비세의 세수추이 및 구성비

(단위: 억원, %)

연도	물품세		석유류세		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진화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세수	구성비	
1970	267.26	255	211.73	202	70.49	67	13402	128	4619	44	-	-	-	-	216	206	-	-	-	-	1,047.55	1000	
1974	794.32	277	1,030.91	360	88.77	31	141.64	49	91.56	32	-	-	-	-	532	186	53	18	-	-	2,866.99	1000	
1975	1,176.39	318	1,067.24	288	51.04	14	168.68	46	103.45	28	-	-	-	-	814	220	98	26	-	-	3,705.03	1000	
1977	1,320.20	236	1,019.50	182	160.48	29	150.50	27	72.96	13	999	17.8	-	-	1,222	220	203	36	-	-	5,596.70	1000	
1980	-	-	-	-	-	-	-	-	-	-	5,825	62.6	-	-	2,977	320	50	54	-	-	-	9,302.00	1000
1985	-	-	-	-	-	-	-	-	-	-	9,808	59.5	-	-	5,012	304	1,666	101	-	-	-	16,486.00	1000
1990	-	-	-	-	-	-	-	-	-	-	19,118	40.1	-	-	10,224	214	2,616	55	15,718	330	47,676.00	1000	
1995	-	-	-	-	-	-	-	-	-	-	21,171	24.9	3,718	32.1	18,245	174	5,430	52	21,519	205	83,564.00	1000	
2000	-	-	-	-	-	-	-	-	-	-	22,237	16.9	8,936	48.8	22,542	130	14,581	84	22,515	129	173,851	1000	
2001	-	-	-	-	-	-	-	-	-	-	33,949	18.7	8,600	47.5	22,534	124	13,446	74	23,886	139	181,075	1000	
2002	-	-	-	-	-	-	-	-	-	-	42,385	22.6	9,113	51.7	23,749	137	17,800	01	23,378	119	187,821	1000	
2003	-	-	-	-	-	-	-	-	-	-	43,197	24.3	9,932	50.5	23,115	132	14,000	00	23,846	120	198,131	1000	
2004	-	-	-	-	-	-	-	-	-	-	45,718	22.8	10,742	50.2	23,966	129	6,000	00	23,223	141	200,645	1000	
2005	-	-	-	-	-	-	-	-	-	-	43,366	22.8	10,086	52.2	23,608	128	-	-	24,478	123	199,478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라. 재산세제

넓은 의미의 재산과세는 자산 또는 재산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하며, 개별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자본이득세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61년에 들어서 국세인 대지세와 광구세, 지방세인 가옥세와 선세가 시군세인 재산세로 통합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다. 또한 1974년부터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세율이 누진구조 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였다. 그리고 재산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0.3%에서 7%에 이르는 6단계의 초과누진구조를 지녔다. 그러나 2005년부터 6단계의 재산세 세율구조가 3단계로 축소되고 동시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 금액(6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표 III-15> 재산세의 세율구조 변천

(단위: 만원, %)

용도	세율체계								
	1974년		1986년		1990년	1994년	2005년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과표	과표	세율	
건축물	주택	700 이하 700 초과 1000초과 1800초과 2600초과 3500초과	0.3 0.5 1.0 3.0 5.0 -	700이하 700초과 1000초과 1800초과 2600초과 3500초과	0.3 0.5 1.0 3.0 5.0 7.0	1000이하 1000초과 1300초과 1800초과 2600초과 3500초과	1200이하 1200초과 1600초과 2200초과 3000초과 4000초과	4000이하 10000이하 10000초과	0.15 0.3 0.5
	사치성 재산	5.0					4.0		
	지정지역 내공장	0.6					0.5		
	기타	0.3					0.3		
	기타	0.3					0.3		
	항공기	5.0					5.0		
항공기	0.3					0.3			

자료: 조세통람사(주), 『조세편람』, 2006

<표 III-16> 연도별 재산세제 세수

(단위: 십억원, %)

	'74	'86	'90	'94	'00	'01	'02	'03	'04	'05
국내 총생산				341823	578,665	622,123	684,264	724,675	778,445	806,622
국 세	8,447	12,622	26,847	47,262	92,935	95,793	103,968	114,664	117,796	127,466
· 종합부 동산세	-	-	-	-	-	-	-	-	-	441
지 방 세	108	1,810	6,367	13,231	20,600	26,664	31,525	33,132	34,202	35,977
· 재산세	16	265	227	481	727	763	817	903	1,017	2,587
· 종토세	-	-	340	1,026	1,281	1,365	1,405	1,651	2,032	2
· 공동 시설세	0.5	45	86	183	341	350	374	411	465	446
· 도시 계획세	2	124	244	564	815	851	893	998	1,185	1,353

주: 1. 거래세는 징수액 기준 자료이며, 부동산 이외의 선박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 (부동산 관련 거래세수 자료를 별도 분리하여 집계·공표하지 않음).

2.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자료: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그 초과금액에 대해 2차적으로 부과하여, 2005년 기준 4,413억원의 세수를 징수하였다.

마. 기타

1970년 관세청의 설립으로 관세행정의 집행은 관세청이 담당하고 관세법령, 관세율 등 정책업무는 재무부가 맡는 이원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균등관세율제도로의 이행, HS분류방식에서의 전환 및 수출입물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77

품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1983년과 1988년에 걸쳐 대폭적으로 관세정책이 개편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WTO 출범으로 인한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도록 각종 관세정책을 정비하였다. 즉, 수출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2.5% 방위세를 1991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예상되는 관세율 인상 등 불필요한 대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 적용하고 산업폐기물 등과 관련된 산업을 위해 필요한 기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80% 감면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또한 1996년 7월 1일부터 수출입면허제를 수출입신고제로 전환,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생략, 관세의 사후납부제도 도입 및 보세구역반입 보세운송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등 수출입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법률에 근거하여 관세율을 구분하면, 국내법에 의해 정해지는 국정세율과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정해지는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세율은 다시 기본관세, 잠정관세 및 탄력관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협정세율은 GATT 양허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탄력세율제도는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책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그 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 11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중심관세율은 8% 수준이며 공산품의 경우에는 평균 6.2%, 농산물은 수입이 불가피한 곡물 등에 대해서는 5% 이하의 저관세, 보호가 필요한 물품은 30~50%의 고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이들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부가가치세는 제외) 관세환급제도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관세감면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관세 지원을 하고 있다.

<표 III-17> 관세수입의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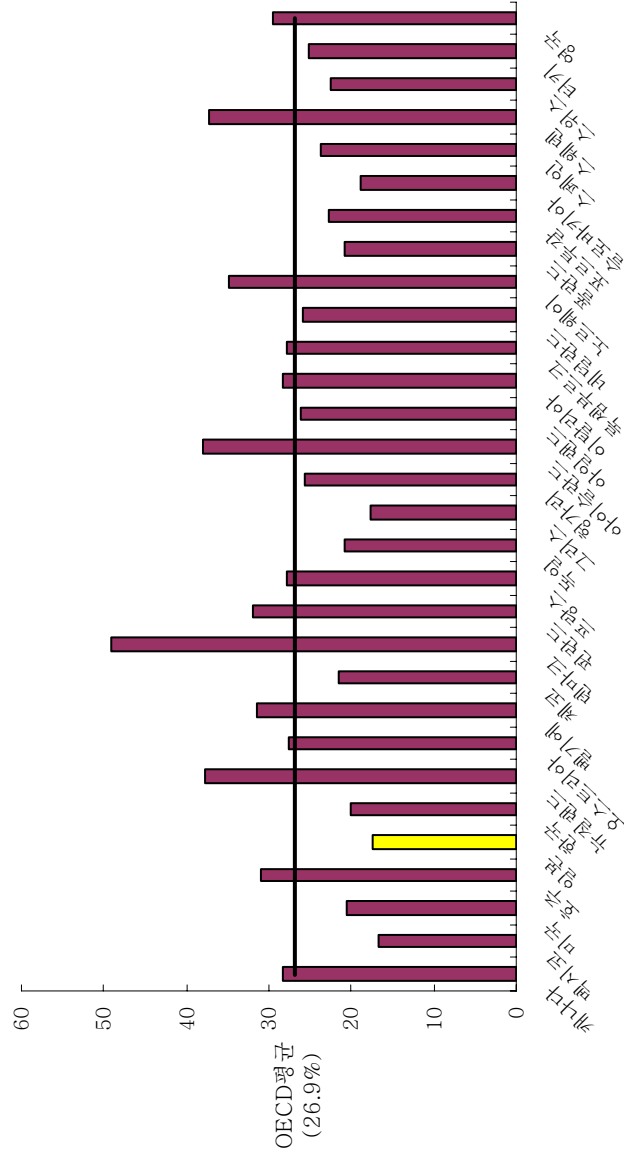
	조세수입 대비 관세 비중	국제수입 대비 관세 비중
1973	12.6	15.8
1976	11.9	14.4
1978	15.8	17.7
1981	10.9	12.3
1983	12.8	14.6
1988	11.4	13.2
1991	9.0	11.3
1992	7.1	9.0
1993	6.2	8.0
1995	6.2	7.7
1996	7.9	8.2
1997	7.9	8.3
1998	4.7	5.7
1999	5.0	6.2
2000	6.3	7.0
2001	5.9	6.9
2002	5.8	7.0
2003	5.7	6.5
2004	5.7	6.3
2005	4.6	5.2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분 제외)은 2005년에 20.2%로 OECD 평균인 26.9%보다 6.7%포인트 낮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 일본, 그리스, 슬로바키아 5개국에 불과하다. 1980년대에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하락 추이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4]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비교(2005년)



주: 사회보장분담금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표 III-18>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캐나다	24.3	27.9	28.8	27.7	28.1	31.5	30.6	30.8	28.6	28.4
멕시코				13.9	15.0	15.0	13.9	15.4	15.8	16.8
미국	21.4	22.7	20.3	20.6	19.1	20.5	20.9	23.0	19.2	20.6
호주	21.0	21.5	25.8	26.7	28.3	28.5	28.8	31.1	31.1	30.9
일본	14.3	15.3	14.8	18.0	19.1	21.4	17.9	17.5	16.4	17.3
한국			14.9	17.1	16.1	17.9	18.1	19.6	19.5	20.2
뉴질랜드	24.0	25.9	28.5	30.6	31.1	37.4	36.6	33.6	35.5	37.8
오스트리아	25.4	25.3	26.5	26.9	27.9	26.6	26.3	28.1	28.3	27.6
벨기에	21.3	24.1	27.6	29.4	30.3	28.1	29.2	31.0	30.8	31.5
체코							22.0	19.7	22.1	21.6
덴마크	28.8	37.1	28.2	42.5	44.8	45.6	47.7	47.6	48.1	49.2
핀란드	28.3	28.7	29.1	27.4	31.0	32.4	31.6	35.3	31.8	32.0
프랑스	22.4	21.7	21.0	23.0	24.3	23.5	24.5	28.4	27.3	27.8
독일	23.1	22.0	22.6	23.9	22.9	21.8	22.7	22.7	20.7	20.9
그리스	10.6	12.2	11.9	12.6	14.3	15.9	17.0	20.5	17.4	17.7
헝가리							26.6	26.9	26.3	25.6
아이슬란드	24.1	25.1	29.2	29.0	27.5	30.0	28.7	35.2	35.1	38.1
아일랜드	23.3	26.1	24.8	26.6	29.5	28.2	27.3	27.5	25.8	26.1
이탈리아	16.8	16.0	13.7	18.4	22.0	25.4	27.5	30.2	28.6	28.4
룩셈부르크	18.8	16.7	23.1	25.4	29.1	26.0	27.3	29.1	27.0	27.8
네덜란드	22.7	23.0	25.4	26.9	23.8	26.9	24.1	24.2	23.6	25.8
노르웨이	26.1	29.0	29.5	33.5	33.8	30.2	31.3	33.7	33.9	34.8
폴란드							25.2	22.4	20.0	20.7
포르투갈	12.4	14.0	12.9	16.1	18.7	20.2	22.1	23.8	22.7	22.7
슬로바키아								19.8	18.4	18.8
스페인	10.5	10.0	9.7	11.6	15.9	21.0	20.5	22.2	22.6	23.7
스웨덴	30.8	32.5	33.5	33.4	35.8	38.4	34.8	38.7	36.2	37.2
스위스	14.9	16.6	19.1	19.4	20.1	19.9	20.3	23.1	22.0	22.6
터키	9.9	11.7	14.5	15.4	13.2	16.1	19.8	26.3	23.8	25.1
영국	25.7	31.9	29.1	29.3	30.9	30.1	28.5	30.9	28.9	29.6
OECD평균	20.9	22.4	23.0	24.0	25.1	26.1	25.9	27.3	26.3	26.9

주: 사회보장분담금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또한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총 세수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표 III-19>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치인 36.2%보다 낮은 25.5%(2005년 기준)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81

이고, 2006년 현재는 26.8%로 늘어났다. 2005년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1.3%포인트), 이탈리아(1.7%포인트) 및 아일랜드(1.1%포인트)가 1%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I-19>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GDP 대비 총세수 비교
(1975~2006)

	1975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¹⁾
캐나다	32.0	32.5	35.9	35.6	35.6	33.6	33.4	33.4
멕시코		17.0	17.3	16.7	18.5	19.0	19.9	20.6 ³⁾
미국	25.6	25.6	27.3	27.9	29.9	26.0	27.3	28.2
호주	25.8	28.3	28.5	28.8	31.1	31.1	30.9	n.a.
일본	20.9	27.4	29.1	26.8	27.0	26.3	27.4	n.a.
한국	15.1	16.4	18.9	19.4	23.6	24.6	25.5	26.8
뉴질랜드	28.5	31.1	37.4	36.6	33.6	35.5	37.8	36.5
오스트리아	36.7	40.9	39.6	41.1	42.6	42.8	42.1	41.9
벨기에	39.5	44.4	42.0	43.6	44.9	44.8	45.4	44.8
체코				37.5	35.3	38.3	37.8	36.7
덴마크	38.4	46.1	46.5	48.8	49.4	49.3	50.3	49.0
핀란드	36.5	39.7	43.5	45.7	47.2	43.4	44.0	43.5
프랑스	35.4	42.8	42.0	42.9	44.4	43.5	44.1	44.5
독일	34.3	36.1	34.8	37.2	37.2	34.8	34.8	35.7
그리스	16.9	22.2	22.8	25.2	29.7	27.1	27.3	27.4
헝가리				41.3	38.0	37.6	37.2	37.1
아이슬란드	30.0	28.2	30.9	31.2	38.1	38.3	41.4	n.a.
아일랜드	28.7	34.6	33.1	32.0	31.7	30.2	30.6	31.7
이탈리아	25.4	33.6	37.8	40.1	42.3	41.1	41.0	42.7
룩셈부르크	32.8	39.5	35.7	37.1	39.1	37.9	38.6	36.3
네덜란드	41.2	42.6	42.9	41.5	39.7	37.4	39.1	39.5
노르웨이	39.2	42.6	41.0	40.9	42.6	43.3	43.7	43.6
폴란드				36.2	31.6	33.4	34.3	n.a.
포르투갈	19.7	25.2	27.7	31.7	34.1	33.8	34.8	35.4
슬로바키아					32.9	31.6	31.6	29.6
스페인	18.4	27.2	32.5	32.1	34.2	34.7	35.8	36.7
스웨덴	41.6	47.8	52.7	48.1	52.6	49.9	50.7	50.1
스위스	24.5	26.1	26.0	27.8	30.5	29.1	29.7	30.1
터키	16.0	15.4	20.0	22.6	32.3	31.3	32.3	32.5
영국	35.3	37.6	36.3	34.7	37.3	35.6	36.5	37.4
OECD평균	29.5	32.7	33.9	34.9	36.2	35.5	36.2	n.a.

주: 1) 잠정수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그리고 <표 III-20>을 살펴보면, OECD국가들의 소득세제 비중이 2004년 12.4%에서 2005년 13.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6.9%에서 7.5%로 비슷한 상승추세를 보였다.

<표 III-20>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득세제 비교
(1975~2006)

	1975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¹⁾
캐나다	15.1	14.4	17.4	16.5	17.8	15.7	15.9	16.3
멕시코		3.8	4.7	4.1	5.0	4.7	4.8	5.2
미국	11.8	11.6	12.6	12.8	15.1	11.4	12.7	13.7
호주	14.5	15.4	16.3	15.9	18.1	18.2	18.2	n.a.
일본	9.3	12.5	14.6	10.3	9.4	8.4	9.3	n.a.
한국	3.7	4.3	6.5	6.2	6.8	6.9	7.5	7.9
뉴질랜드	19.0	21.6	22.3	22.4	20.2	21.7	23.8	22.6
오스트리아	9.6	10.8	10.1	10.9	12.2	12.6	12.0	12.2
벨기에	15.6	17.9	15.5	16.6	17.3	17.0	17.4	16.9
체코	-	-	-	9.4	8.0	9.6	9.1	8.6
덴마크	22.6	26.6	28.0	30.1	29.8	29.8	30.7	29.3
핀란드	15.8	16.2	17.1	16.5	20.3	16.8	16.8	16.6
프랑스	5.6	6.8	6.7	7.0	11.1	10.2	10.4	10.8
독일	11.8	12.5	11.3	11.3	11.2	9.5	9.8	10.8
그리스	2.2	3.9	4.5	5.6	8.1	6.5	7.0	6.5
헝가리	-	-	-	8.6	9.2	8.9	8.8	9.0
아이슬란드	6.8	6.4	9.2	10.6	15.4	16.9	18.8	n.a.
아일랜드	8.6	12.0	12.2	12.7	13.3	12.0	11.8	11.0
이탈리아	5.4	12.4	13.8	14.2	14.0	12.9	12.9	14.0
룩셈부르크	14.1	17.0	14.0	14.6	14.1	12.6	13.3	12.7
네덜란드	14.3	11.2	13.8	10.9	10.0	9.2	10.8	10.9
노르웨이	13.5	16.9	14.4	14.3	19.2	20.1	21.5	21.7
폴란드	-	-	-	11.1	9.7	5.9	6.4	n.a.
포르투갈	3.4	6.5	7.1	7.9	9.6	8.3	8.5³	8.5
슬로바키아	-	-	-	-	7.0	5.7	5.7	5.7
스페인	4.1	7.1	10.0	9.4	9.7	9.8	10.5	11.3
스웨덴	21.0	20.2	22.0	18.9	21.5	19.0	19.8	19.7
스위스	11.7	12.0	12.1	12.0	13.4	12.6	13.2	13.7
터키	6.8	5.7	6.7	6.4	9.5	6.9	7.0	7.0
영국	15.8	14.5	14.3	12.8	14.6	13.1	14.0	14.9
OECD평균	11.3	12.3	13.0	12.4	13.3	12.4	13.0	n.a.

주: 1) 잠정수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83

이러한 OECD 30개 국가의 세수입에 대한 조세구조는 <표 III-21>과 같이 총 6개의 큰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⁶⁾

<표 III-21>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5)

	Income and profits	Social Security	Payroll	Property	Goods and Services	Others
캐나다	47.5	14.8	2.0	10.0	25.4	0.3
멕시코	24.1	15.7	1.2	1.6	56.7	0.7
미국	46.5	24.7	-	11.4	17.4	-
호주	59.1	-	4.5	8.7	27.8	-
일본	33.8	36.8	-	9.7	19.4	0.3
한국	29.3	21.0	0.2	11.9	34.3	3.2
뉴질랜드	63.0	-	-	4.9	32.1	0.0
오스트리아	28.6	34.5	6.1	1.3	28.4	0.9
벨기에	38.3	30.6	-	4.7	25.3	0.1
체코	24.1	42.9	-	1.2	31.3	0.0
덴마크	61.0	2.2	0.4	3.7	32.2	0.0
핀란드	38.3	27.3	-	2.7	31.3	0.1
프랑스	23.5	37.0	2.7	7.8	25.3	3.5
독일	28.2	39.9	-	2.5	29.0	0.0
그리스	25.5	35.2	-	4.3	34.6	-
헝가리	23.6	31.3	2.2	2.3	39.7	0.7
아이슬란드	45.4	8.0	-	6.0	40.4	0.2
아일랜드	38.4	14.8	0.7	7.9	37.8	-
이탈리아	31.5	30.8	0.0	5.0	26.4	5.9
룩셈부르크	34.4	28.0	-	8.5	28.8	0.1
네덜란드	27.7	33.9	-	5.3	31.7	0.5
노르웨이	49.1	20.4	-	2.6	27.9	-
폴란드	18.7	39.7	0.8	3.8	36.7	-
포르투갈	24.5	32.7	-	2.9	39.3	0.3
슬로바키아	18.0	40.4	-	1.6	39.7	-
스페인	29.4	33.7	-	8.4	28.0	0.4
스웨덴	39.1	26.7	4.7	3.0	26.1	0.1
스위스	44.5	23.9	-	8.0	23.6	-
터키	21.8	22.4	-	3.3	49.3	3.1
영국	38.5	18.8	-	12.0	30.3	-
OECD 평균	35.2	25.6	0.8	5.6	31.9	0.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6) 이러한 6가지 세목그룹(tax categories)에 대한 분류의 정의는 다음을 참조. "Annex A: The OECD Classification of Taxes and Interpretative Guide", OECD, 2006, p. 281.

<표 III-21>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세수입 중 소득세제(income and profit taxes)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29.3%(2005년 기준)로 OECD국가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의 평균인 35.2%보다 5.9%포인트 낮은 편이다.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income and profit taxe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총 조세 대비 소비세제(goods and services taxes)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그 후 차차 하락해오다가 2004년 36.3%, 2005년 3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멕시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과 같이 OECD 내의 후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총 세수 중 소비세제(goods and services taxe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34.3%로 OECD국가 중 10위이며, 이 수치는 OECD국가들의 평균값인 31.9%보다 2.4%포인트 높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 세수입 중 재산세제(property taxes)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세수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OECD 평균인 5.6%보다 6.3%포인트 높으며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 세수입에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로 OECD국가들의 평균값인 25.6%보다 5.4%포인트 낮다. 또한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순위는 데이터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고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5]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 한국의 세수 구조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제의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세제와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85

<표 III-22>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조세구조 변천(1970~2005)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1. Taxes on personal income as a percentage of total taxation										
한국	-	8.5	11.5	13.4	21.1	19.2	14.6	12.7	13.6	13.3
OECD 평균	27.9	29.8	31.3	29.7	29.7	27.1	26.0	25.0	24.6	24.6
2. Taxes on corporate income as a percentage of total taxation										
한국	-	8.9	11.0	11.4	13.5	12.3	14.1	15.3	14.3	16.0
OECD 평균	8.8	7.6	7.6	8.0	8.0	8.1	10.1	9.3	9.6	10.3
3. Taxes on goods and services as a percentage of total taxation										
한국	-	61.1	62.7	59.5	46.7	43.1	38.3	37.1	36.3	34.3
OECD 평균	36.0	32.7	32.4	33.7	31.9	32.4	31.6	32.1	32.3	31.9
4.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a percentage of total taxation										
한국	-	0.9	1.1	1.5	5.1	7.0	16.7	19.5	20.7	21.0
OECD 평균	19.1	22.0	22.1	22.2	22.3	24.7	24.5	26.1	25.9	25.6
5. Taxes on payroll and work force as percentage of total taxation										
한국	-	0.0	0.5	0.5	0.4	0.3	0.2	0.2	0.2	0.2
OECD 평균	1.1	1.3	1.3	1.1	1.0	0.9	0.9	0.9	0.8	0.8
6. Taxes on property as a percentage of total taxation										
한국	-	9.7	8.0	9.1	12.4	14.8	12.4	11.8	11.3	11.9
OECD 평균	7.1	6.3	5.3	5.2	5.7	5.5	5.5	5.6	5.6	5.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표 III-22>와 같다. 우선 1975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es)의 비중은 1975년 8.5%에서 1990년도에 21.1%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2003년 12.7%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에 13.3%

로 다시 0.6%포인트 소폭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1975년 8.5%에서 2005년 13.3%로 4.8%포인트 증가하였다. 1975년도에서 1990년도까지 동안 개인소득세 경향은 OECD국가와 우리나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2003년도까지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75년에서 2005년 동안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corporate taxes) 비중은 8.9%에서 16.0%로 7.1%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년도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95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1.2%포인트, 1%포인트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OECD국가는 1975년에서 2005년 동안 7.6%에서 10.3%로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7.1%에 비해 4.4%포인트 작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증가는 소비세제 비중의 감소현상과 상관성이 있으며 개인소득세의 비중 증가폭 대비 소비세의 비중 감소폭이 약 5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국가들의 평균 소비세제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36.0%로 감소하고 있다. 이 때, 감소폭은 우리나라의 24.8% 대비 무려 20.1%포인트나 적은 4.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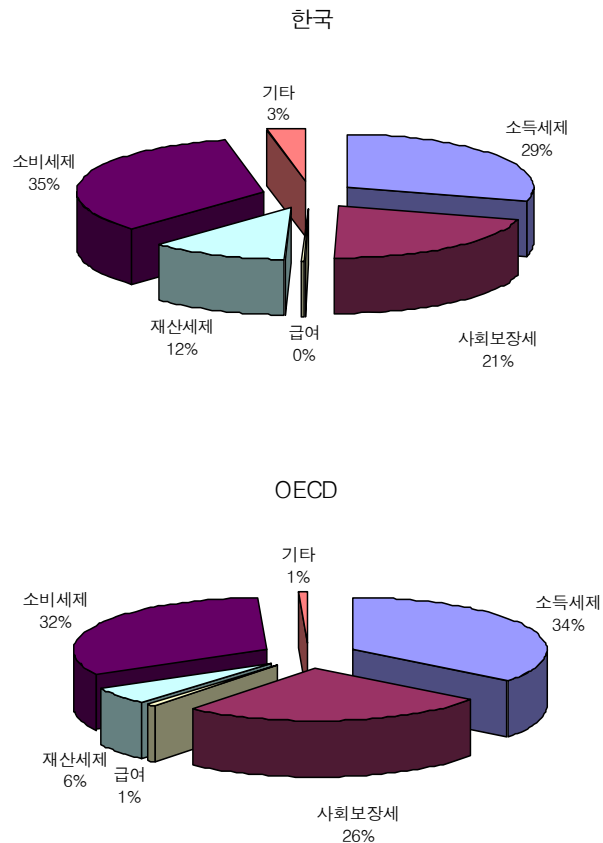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관련세가 1975년 0.9%에서 2005년 21.0%로 20.1%포인트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값은 순수 증가한 금액만을 비교해볼 때,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OECD국가들 역시 1975년 22.0%에서 2005년 25.6%로 3.6%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놀랄만한 증가는 아니다.

또한 1975년에서 2005년 동안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OECD국가들의 평균 재산세가 6.3%에서 5.6%로 0.7%포인트 감소한 것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87

과 달리 같은 기간 동안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9.7%에서 11.9%로 2.2%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도 수치를 보면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OECD국가들의 평균 재산세 비중보다 우리나라의 비중이 약 두 배 정도 더 크다. 이는 [그림 Ⅲ-5]에서도 재산세 비중이 OECD국가들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5] 조세구조 비교: 우리나라와 OECD 평균(2005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표 III-23> 6개 부문별 GDP 대비 세수 비중(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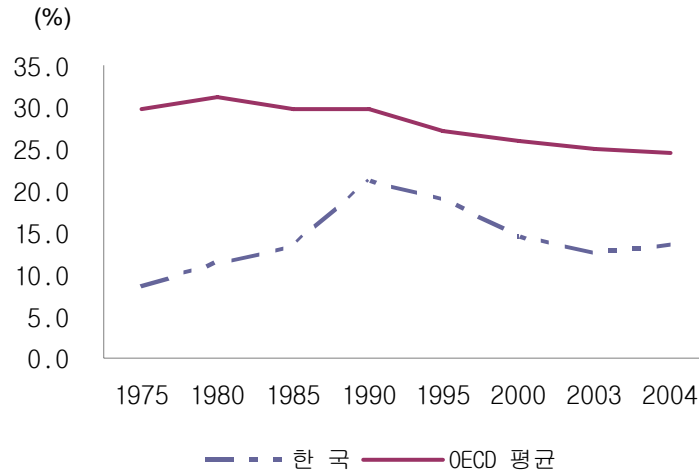
(단위: %)

	Income and profits	Social Security	Payroll	Property	Goods and Services	Other
캐나다	15.9	5.0	0.7	3.4	8.5	0.1
멕시코	4.8	3.1	0.2	0.3	11.3	0.1
미국	12.7	6.7	-	3.1	4.8	-
호주	18.2	-	1.4	2.7	8.6	-
일본	9.3	10.1	-	2.6	5.3	0.1
한국	7.5	5.4	0.1	3.0	8.8	0.8
뉴질랜드	23.8	-	-	1.9	12.1	0.0
오스트리아	12.0	14.5	2.6	0.6	12.0	0.4
벨기에	17.4	13.9	-	2.2	11.5	0.0
체코	9.1	16.2	-	0.4	11.8	0.0
덴마크	30.7	1.1	0.2	1.9	16.2	0.0
핀란드	16.8	12.0	-	1.2	13.8	0.0
프랑스	10.4	16.3	1.2	3.5	11.2	1.5
독일	9.8	13.9	-	0.9	10.1	0.0
그리스	7.0	9.6	-	1.2	9.4	-
헝가리	8.8	11.6	0.8	0.8	14.8	0.2
아이슬란드	18.8	3.3	0.0	2.5	16.7	0.1
아일랜드	11.8	4.5	0.2	2.4	11.6	-
이탈리아	12.9	12.6	-	2.1	10.8	2.4
룩셈부르크	13.3	10.8	-	3.3	11.1	0.0
네덜란드	10.8	13.3	-	2.1	12.4	0.2
노르웨이	21.5	8.9	-	1.1	12.2	-
폴란드	6.4	13.6	0.3	1.3	12.6	-
포르투갈	8.5	11.4	-	1.0	13.6	0.1
슬로바키아	5.7	12.8	-	0.5	12.5	-
스페인	10.5	12.0	-	3.0	10.0	0.2
스웨덴	19.8	13.5	2.4	1.5	13.2	0.1
스위스	13.2	7.1	-	2.4	7.0	-
터키	7.0	7.2	-	1.1	15.9	1.0
영국	14.0	6.9	-	4.4	11.1	-
OECD 평균	13.0	9.2	0.3	1.9	11.4	0.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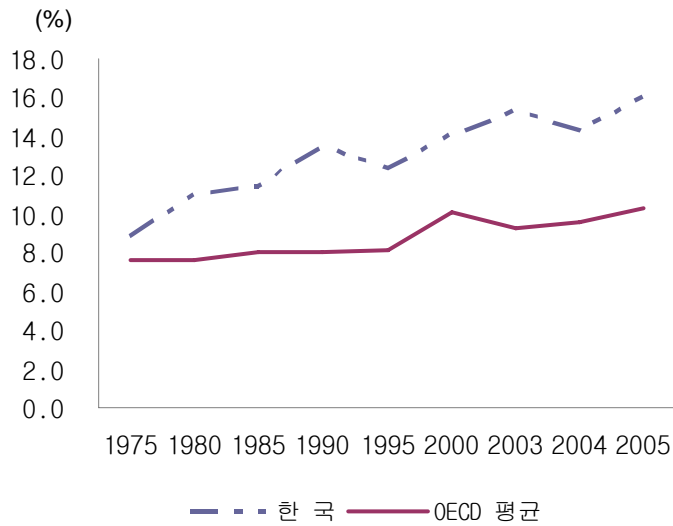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89

[그림 III-6] 총 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추이(197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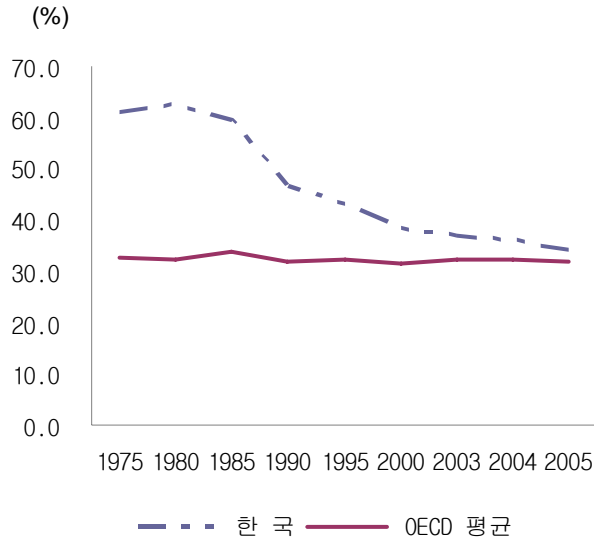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그림 III-7] 총 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197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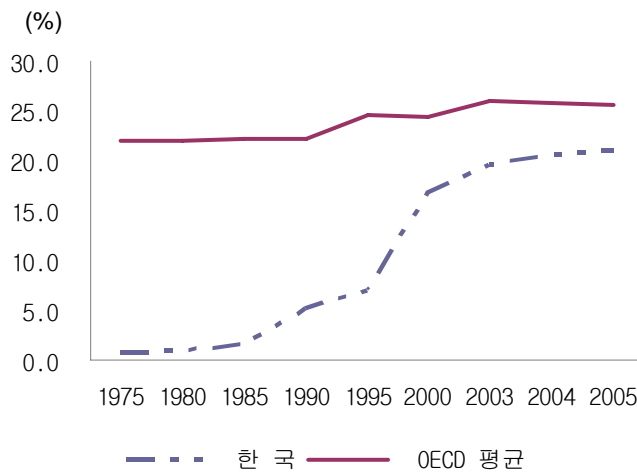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그림 III-8] 총 세수 대비 소비세제 비중 추이(197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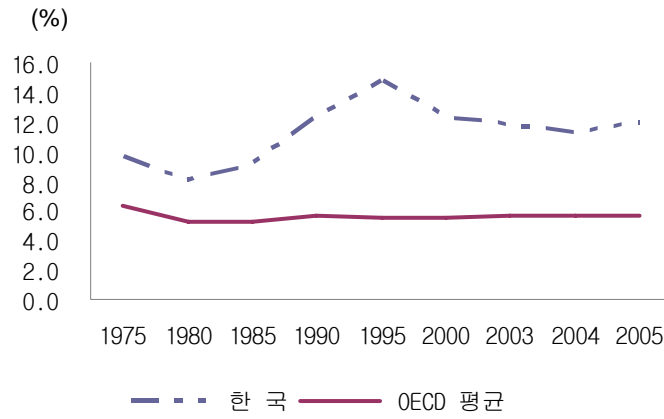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그림 III-9] 총 세수 대비 사회보장세 비중 추이(1970~200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그림 III-10] 총 세수 대비 재산세 비중 추이(1970~200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IV.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 모형

조세의 부과는 상품 및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체계를 변화시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 변화를 유발하며, 그 효과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조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과세는 일반적으로 그 세수 이상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효율비용(incentive-based efficiency cost),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 납세준응비용(compliance cost)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은 조세의 종류별로 다르다.

이 중에서 조세의 효율비용(efficiency cost)⁷⁾은 조세의 부과로 인해 보다 덜 선호하는 소비로의 대체나 생산행위 패턴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다. 이러한 경제유인과 관련된 왜곡비용은 주로 경제주체의 행태반응(behavioral responsiveness)의 크기와 기존 조세의 한계세율(existing marginal tax rates)의 크기에 크게 좌우된다. 제II장의 단순부분균형 분석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효율비용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주체의 행위가 세후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또는 기존 조세체계의 한계세율이 클수록 증가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에 있어 부분균형 분석은 특정한 단일시장만을 기초로 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또한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대부분의 CGE모형에서는 각종 행태모수값들을 단순히 복합적으로 수집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결

7) 여기서 '효율비용'은 각종 문헌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cost) 또는 초과부담(excess burden)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과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Jorgenson and Yun(1991, 2001)과 Diewert and Lawrence(1996, 1998)의 방법론과 같이 분석모형 내 각종 행태모수값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체계에서 실제 과거 실증자료를 가지고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조세 효율비용을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본장에서 이용한 분석모형은 Diewert and Lawrence(1996, 1998)의 모형을 약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표적 소비자 경제하에서 특정 시점 t 기에 단순히 일반소비재 (aggregate good)⁸⁾, 수출재, 수입재, 노동(또는 여가), 그리고 자본의 5가지 상품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일반소비재 $C(t)$
- 수출재 $X(t)$
- 수입재 $M(t)$
- 노동 $L(t)$ (또는 여가 $J(t)$) 단, $J(t) = H(t) - L(t)$
($H(t)$: 노동부존)
- 자본 $K(t)$

또한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의 경제 균형(equilibrium distorted by taxes)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세제상 정부의 각종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제주체의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의 가격왜기(price wedge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령 시점 t 기의

8) 여기서 ‘일반소비재’는 분석의 편의상 민간과 정부의 소비재와 투자재를 포괄하는 경제 산출물의 총계를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일반소비재의 총계는 나중에 분석의 목적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 등 각종 세부적 소비항목이나 투자재 혹은 비내구재와 내구재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disaggregate)할 수 있다.

일반소비재, 수출재, 수입재, 노동, 그리고 자본(여기서는 이윤)에 대한 세율은 각각 $\tau_1(t)$, $\tau_2(t)$, $\tau_3(t)$, $\tau_4(t)$, $\tau_5(t)$ 이고, 그 생산자 가격(producer price)은 각각 $p_1(t)$, $p_2(t)$, $p_3(t)$, $p_4(t)$, $p_5(t)$ 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 상품들의 소비자가격(consumer price)은 각각 $p_1(t)(1+\tau_1(t))$, $p_2(t)(1+\tau_2(t))$, $p_3(t)(1+\tau_3(t))$, $p_4(t)(1-\tau_4(t))$, $p_5(t)(1-\tau_5(t))$ 이다.

1. 소비과세, 관세, 노동과세의 효율비용

가. 분석모형 설정

먼저 소비자 행태 및 생산자 행태에 관한 신고전파 이론에 따르면 자본스톡이 고정된 비교적 단기에 있어서는 경제주체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 소비자(representative consumer)의 최종소비지출 $c(t)$ 와 여가수요 $J(t)$ 의 효용함수 $u[c(t), J(t)]$ 와 생산자의 생산함수 $f[L(t), K(t)]$ 에 대하여 각각 쌍대정리(duality theorem)를 적용하면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와 이윤함수(profit function)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 소비자의 지출함수:

$$e[p_1(t)(1+\tau_1(t)), p_4(t)(1-\tau_4(t)), u] \quad (4.1)$$

- 생산자의 이윤함수:

$$\pi[p_1(t), p_2(t), p_3(t), p_4(t), K(t)] \quad (4.2)$$

그리고 일반소비재의 최종수요 중 고정자본형성을 $I(t)$, 정부소비지출을 $G(t)$, 민간에 대한 정부이전지출을 $TR(t)$, 정부수지

$D(t)$, 그리고 대외수지를 $B(t)$ 이라고 하면, 위 지출함수 (4.1)과 이윤함수 (4.2)를 이용하여 분석경제 전반의 세후 균형에 관한 다음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이하 수식의 간소화를 위하여 시간 첨자 t 는 생략한다).

먼저 소비자 이론의 Shephard's lemma와 Hicksian 보상수요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대표적 소비자의 일반소비재와 노동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균형식은 각각 다음의 식 (4.3)과 (4.4)와 같이 도출된다.

$$\partial e(p_1(1+\tau_1), p_4(1-\tau_2), u)/\partial p_1 + I + G = \partial \pi(p_1, p_2, p_3, p_4, K)/\partial p_1 \quad (4.3)$$

$$\partial e(p_1(1+\tau_1), p_4(1-\tau_4), u)/\partial p_4 = \partial \pi(p_1, p_2, p_3, p_4, K)/\partial p_4 + H \quad (4.4)$$

그리고 대표적 소비자의 예산제약식, 정부수지 및 무역수지 균형식은 각각 다음 식 (4.5), (4.6) 및 (4.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e(p_1(1+\tau_1), p_4(1-\tau_4), u) = \\ p_4(1-\tau_4)H + (1-\tau_5)\pi(p_1, p_2, p_3, p_4, K) + p_5K - p_1I - p_1D - B + TR \end{aligned} \quad (4.5)$$

$$\begin{aligned} \tau_1 p_1 \partial e(p_1(1+\tau_1), p_4(1-\tau_4), u)/\partial p_1 + \tau_2 p_2 \partial \pi(p_1, p_2, p_3, p_4, K)/\partial p_2 \\ + \tau_3 p_3 \partial \pi(p_1, p_2, p_3, p_4, K)/\partial p_3 + \tau_4 p_4 \partial e(p_4(1+\tau_4), p_4(1-\tau_4), u)/\partial p_4 \\ + \tau_5 \pi(p_1, p_2, p_3, p_4, K) + p_1D = p_1G + TR \end{aligned} \quad (4.6)$$

$$p_2 \partial \pi(p_1, p_2, p_3, p_4, K) / \partial p_2 + p_3 \partial \pi(p_1, p_2, p_3, p_4, K) / \partial p_3 = B \quad (4.7)$$

여기서, 노동을 기준재(numeraire good)로 하여 그 생산자가격을 $p_4 = 1$ 로 정규화한다. 그리고 Diewert and Lawrence(1996)에서와 같이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지표로서 Allais(1977), Debreu(1954), Diewert(1985)와 Kay and Keen(1988)에서 사용된 개념과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에 정부이전지출로 보전함으로써 조세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를 통하여 조세 효율비용을 측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가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분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증세에 따른 조세채기(tax wedges)의 증가가 일차적으로 대표적 소비자의 사적효용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소비자의 사적효용을 조세 증가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조세이전지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충분한 보상수준의 크기는 당초 세수 증가분의 크기를 능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크기가 조세 증가에 따른 효율비용을 의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Allais-Debreu 초과부담' 개념을 활용하면 분석경제의 조세의 효율비용은 소비자의 사적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세율 변화에 따른 경제의 후생변화 지표는 단순히 최종소비재의 기준 소비자가격 P_1 에서 평가된 정부소비지출 $G(\tau_1, \tau_2, \tau_3, \tau_4)$ 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Diewert and Lawrence, 1996, p. S667). 즉 이러한 경우 위 연립방정식 체계 식 (4.3)~(4.7)의 균형 해를 분석경제의 외생변수인 세율변수들 $\tau_1, \tau_2, \tau_3, \tau_4$ 로서 상품에 대한 정부소비지출 $G(\tau_1, \tau_2, \tau_3, \tau_4)$, 소비자 이전지출 $TR(\tau_1, \tau_2, \tau_3, \tau_4)$ 와 최종소비재 생산자가격 $p_1(\tau_1, \tau_2, \tau_3, \tau_4)$ 을 표현

한다면, 조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 지표 $W(\tau_1, \tau_2, \tau_3, \tau_4)$ 와 조세부과에 따른 정부의 세수 $R(\tau_1, \tau_2, \tau_3, \tau_4)$ 은 각각 다음의 식 (4.8)과 (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tau_1, \tau_2, \tau_3, \tau_4) \equiv P_1 G(\tau_1, \tau_2, \tau_3, \tau_4) \quad (4.8)$$

$$R(\tau_1, \tau_2, \tau_3, \tau_4) \equiv p_1(\tau_1, \tau_2, \tau_3, \tau_4)G(\tau_1, \tau_2, \tau_3, \tau_4) + TR(\tau_1, \tau_2, \tau_3, \tau_4) \quad (4.9)$$

그러면 위 식에 따라 특정 상품 i 의 세율 τ_i 의 인상에 따른 분석경제의 한계효율비용(marginal efficiency cost)의 측정지표 $MEC(\tau_i)$ 는 다음의 식 (4.10)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MEC(\tau_i) \equiv - \frac{\partial W(\tau_1, \tau_2, \tau_3, \tau_4) / \partial \tau_i}{\partial R(\tau_1, \tau_2, \tau_3, \tau_4) / \partial \tau_i} \quad (4.10)$$

나. 자료 정비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입부문은 많은 국세와 지방세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본 모형경제에서는 이를 크게 단순화하여 소비 관련 과세, 수입 관련 과세, 노동 관련 과세, 자본 관련 과세 등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특히 여기서 분석의 편의상 경제 내 단일 총량상품(aggregate good)을 가정하므로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담세소비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세수입과 재정적자로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소비와 정부 고정자본형성, 민간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먼저 주요 세목별로 유효세율구조와 효율비용을 추정하고 서로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상품 및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가치(value), 가격지수(price index), 그리고 수량지수(quantity index)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반 경제부문 통계자료와 함께 조세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정부의 시장가격시스템에 대한 췌기(wedge)로서 일관성 있게 정비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세 관련 자료는 주로 OECD와 IMF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비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이 OECD Revenue Statistics의 기본 분류를 이용하여 거시적(macro-based) 측면에서 분석 모형과 일관되게 주요 세목별 암묵적 실효세율(implicit effective tax rates) 자료로 구성하여 모형추정에 이용한다.

○ 소비 관련 과세

- taxes on goods and services(code 5000)
-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5100)
- general taxes(5110)
-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5120)

○ 수입 관련 과세

- taxes o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 customs and import duties(5123)
- taxes on export(5124)
- other taxes o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5127)

○ 노동 관련 과세

- taxes on labor = individual income tax(1110, taxes on income and profits)

IV.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 모형 99

- social security taxes(2000)
- payroll taxes(3000)

- 자본 관련 과세
 - capital gains taxes(1120)
 - corporate income taxes(1200)
 - other unallocable taxes(1300)
 - taxes on property(4000)

- wage rate (source,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government bond yield rate

<표 IV-1> 우리나라 주요 세목 분류별 세부담 현황(1970~2004)

연도	간접세 (IT)	보조금 (S)	수입세 (TT)	노동관련세 (TL)	법인관련세 (TC)	재산관련세 (TP)
1970	249.1	4.0	50.9	58.2	88.3	6.8
1971	292.5	4.1	52.2	59.6	90.5	7.0
1972	315.0	4.7	59.1	67.5	102.5	7.9
1973	413.0	6.5	82.4	79.1	118.6	9.6
1974	670.7	10.1	126.7	101.9	206.4	15.9
1975	967.3	14.4	181.0	157.5	246.6	28.4
1976	1487.6	21.9	275.5	402.2	294.9	37.8
1977	1936.0	30.6	385.9	460.9	415.1	45.3
1978	2672.4	51.3	646.4	612.6	609.8	47.1
1979	3404.5	58.1	732.3	809.0	818.3	81.5
1980	4346.1	60.8	766.1	887.1	937.7	119.4
1981	5516.8	70.7	890.6	1164.1	1139.7	152.7
1982	6431.8	80.4	1012.6	1399.2	1324.5	172.8
1983	7900.1	116.2	1463.2	1609.0	1418.3	194.8
1984	8437.8	126.6	1594.0	1760.7	1570.3	210.4
1985	9053.1	124.4	1566.1	2146.6	1790.2	237.5
1986	10426.1	154.2	1942.6	2600.9	1908.6	265.8
1987	12039.6	214.1	2696.5	3312.6	2669.7	285.3
1988	13999.5	215.9	2573.6	4547.4	4475.0	301.1
1989	15286.3	355.1	2117.6	5793.2	6020.8	372.4
1990	19499.4	521.9	2765.4	8411.2	5941.2	227.2
1991	22308.6	762.0	3435.5	9427.7	6198.4	275.5
1992	25773.9	1030.8	3153.2	10525.8	7910.0	355.3
1993	28861.8	1384.1	2885.9	13810.4	8042.1	406.6
1994	34589.2	938.9	3448.9	16066.9	9666.7	480.7
1995	40639.9	1384.6	4633.2	18832.8	11811.2	465.9
1996	47725.7	1359.7	5309.5	22364.9	11799.0	532.3
1997	53727.9	1189.7	5797.6	29535.6	11366.3	577.1
1998	46530.2	1065.7	3836.0	35388.5	13250.2	641.0
1999	57744.2	986.8	4687.3	36752.0	11873.0	670.0
2000	65656.4	1045.9	5799.7	41773.0	21761.0	728.0
2001	73588.5	1474.0	5923.4	47432.0	21313.0	763.0
2002	84097.1	1925.5	6601.3	50754.0	25156.0	818.0
2003	87359.6	2446.5	6847.3	56731.0	32605.0	903.0
2004	88272.2	3209.2	6796.5	62057.0	27430.0	1018.0
2005	92344.2	3302.5	6317.7	66522.0	33039.0	2588.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표 IV-2>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분류별 암묵적 유효세율(1970~2004)

연도	일반소비 (TX1)	수입 (TX3)	노동 (TX4)	자본 (TX5)
1970	0.02113	0.07736	0.06241	0.07016
1971	0.01955	0.05966	0.05182	0.06095
1972	0.01766	0.05792	0.04834	0.05134
1973	0.01779	0.04743	0.04347	0.04812
1974	0.02016	0.04299	0.04152	0.06182
1975	0.03078	0.04922	0.04748	0.05414
1976	0.03188	0.06017	0.08584	0.04897
1977	0.04508	0.06735	0.07289	0.05418
1978	0.06379	0.08125	0.06798	0.06078
1979	0.06409	0.06858	0.06726	0.07129
1980	0.06752	0.04943	0.05864	0.06723
1981	0.06656	0.04613	0.06239	0.06762
1982	0.06842	0.05083	0.06452	0.06685
1983	0.07432	0.06550	0.06121	0.06566
1984	0.07044	0.06306	0.05839	0.06597
1985	0.06817	0.05937	0.06385	0.06609
1986	0.06966	0.06475	0.06668	0.05867
1987	0.06961	0.07505	0.07105	0.06933
1988	0.06981	0.06411	0.07919	0.09958
1989	0.07493	0.04762	0.08474	0.12480
1990	0.08206	0.05103	0.10027	0.09919
1991	0.08049	0.05244	0.09049	0.08641
1992	0.08563	0.04413	0.08873	0.09620
1993	0.08756	0.03798	0.10290	0.08474
1994	0.08239	0.03703	0.10224	0.08880
1995	0.07890	0.03882	0.10071	0.09701
1996	0.07990	0.03777	0.10430	0.09715
1997	0.08472	0.03578	0.13034	0.08134
1998	0.07408	0.02380	0.16310	0.07884
1999	0.08327	0.02734	0.16124	0.07127
2000	0.08345	0.02661	0.16833	0.11704
2001	0.08444	0.02681	0.17537	0.11083
2002	0.09311	0.02848	0.17235	0.11658
2003	0.09656	0.02657	0.17734	0.14715
2004	0.09680	0.02195	0.18006	0.11556

주: 여기서 암묵적 유효세율(implicit effective tax rates)은 각각 $TX1=IT/(p1*c)$,
 $TX3=TT/(p3*M)$, $TX4= TL/(p4*L)$, $TX5=(TC+TP)/(p5*K)$ 으로 정의되며
 그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은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산업연관표』, 『국민소득계정』 각년호

다. 계량경제학적 추정

먼저 한국경제의 가변(variable) 순산출 벡터를 $y = (y_1, y_2, y_3, y_4)$, 관련 가격벡터를 $p = (p_1, p_2, p_3, p_4)$, 자본 K 을 포함하는 고정요소 벡터를 s , 관련 가격벡터를 z , 그리고 시점 t 의 기업의 생산기술 집합을 Y^t 라고 할 때 매시점 t 의 가변이윤함수(variable profit function) $\pi(p, s, t)$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단, y_i 가 투입량이면 $y_i < 0$ 이다).

$$\pi(p, s, t) = \max_y \{ p \cdot y : (y, s) \in Y^t \} \quad (4.11)$$

본절에서는 생산자 행태와 관련된 위의 식 (4.11)의 이윤함수 $\pi(p, s, t)$ 을 구체적으로 정식화(functional specification)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경제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각종 자기 및 교차탄력성(own-and cross-price elasticities)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적 제약(a priori restrictions)을 가하지 않으면서 경제행위의 적정 정규성 조건(curvature conditions)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축적 함수로 다음과 같은 normalized quadratic 함수형(Diewert and Wales, 1987, 1992)을 사용한다.

$$\pi(p, s, t) = p C s + p c(h s) t + \frac{1}{2} p A p(h s) / (g h) - \frac{1}{2} s B s(p g) / (h s) \quad (4.12)$$

여기서 가변 순산출 관련 벡터 $g = (g_1, g_2, g_3, g_4)$ 와 고정요소 관련 벡터 h 는 관측치 평균에서 각각 $p^* g = 1$ 와 $s^* h = 1$ 를 만족시키도록 선택한다. 그리고 스칼라 변수 t 는 시간에 따른 기술변화

(technological change)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1970~2004년 한국경제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한편 가변 이윤함수 식 (4.12)를 가격벡터와 고정자본스톡에 대하여 각각 편미분하여 Hotelling's lemma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상품 i 에 대한 순공급(net supply) 함수 및 고정요소 가격함수 식 (4.13)을 얻을 수 있다.

$$x_i(p, s, t) = \partial \pi(p, s, t) / \partial p_i, \quad i = 1, 2, 3, 4; \quad w(p, s, t) = \partial \pi(p, s, t) / \partial s \quad (4.13)$$

이러한 경우 상품 i 에 대한 순공급(net supply)의 상품 j 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epsilon_{ij} = \left(p_j / \tilde{x}_i \right) \partial^2 \pi(p, s, t) / \partial p_i \partial p_j, \quad i, j = 1, \dots, 4. \quad (4.14)$$

<표 IV-3> 생산자 행태 모형의 모수 추정치(1970~2004)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F1	2.8188	0.1697	16.6100
G1	-0.1122	0.0146	-7.6779
H1	-0.0090	0.0192	-0.4666
I1	-0.0549	0.0080	-6.8301
J1	-0.0360	0.0037	-9.6209
L1	0.0046	0.0074	0.6190
A21	-0.1456	0.1450	-1.0043
A31	-0.8930	0.1725	-5.1759
A41	0.0741	0.0172	4.3191
A32	0.8695	0.0763	11.4010
A42	0.4070	0.0235	17.2910
A43	-0.2410	0.0273	-8.8378
F2	0.6474	0.1854	3.4925
G2	0.0641	0.0187	3.4307
H2	0.0738	0.0232	3.1889
I2	0.0791	0.0148	5.3616
J2	0.0818	0.0059	13.9330
L2	0.1247	0.0098	12.7500
F3	-1.0010	0.1832	-5.4653
G3	0.0085	0.0173	0.4904
H3	0.0078	0.0260	0.3000
I3	-0.0072	0.0125	-0.5730
J3	-0.0058	0.0039	-1.4836
L3	-0.0529	0.0092	-5.7291
F4	-0.8282	0.0206	-40.2930
G4	0.0230	0.0021	10.8830
H4	-0.0042	0.0025	-1.7100
I4	0.0039	0.0012	3.1649
J4	0.0019	0.0005	4.1989
L4	-0.0008	0.0009	-0.8870

<표 IV-4> Normalized Quadratic 순공급의 평균 가격탄력성 (1970~2004)

	일반소비재	수출재	수입재	노동
일반소비재	0.409301	0.020525	-0.31578	-0.11405
수출재	0.044626	1.487587	-0.64501	-0.88720
수입재	0.829669	0.556789	-1.08159	-1.08159
노동	0.218991	0.688284	-0.25839	-0.64888

또한 소비자 행태에 관한 모형은 대표적 소비자(representative consumer)의 최종소비지출 $c(t)$ 및 여가수요 $J(t)$ 의 효용함수 $u[c(t), J(t)]$ 의 쌍대(dual)로서 각종 관련 탄력성들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수요이론의 정규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축함수인 Diewert and Wales(1988, 1993)의 normalized quadratic 지출함수를 사용한다.

$$e(p, u) = a p + (b p + d p t + \frac{1}{2} p C p / (p g)) u \quad (4.15)$$

여기서 수요 관련 선결벡터 $g = (g_1, g_2)$ 와 각종 파라미터 벡터 a, b, C 는 한 선결가격벡터 p^* 에서 각각 $a p^* = 0; b p^* = 1$ 와 $C = -U^T U$ (단, $U p^* = 0$)를 만족시키도록 추정한다.

한편 위 지출함수 식 (4.15)를 가격벡터에 대하여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상품 i 에 대한 Hickisian 수요함수를 얻을 수 있다.

$$x_i(p, s, t) = \partial e(p, u) / \partial p_i, i = 1, 2 \quad (4.16)$$

또한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총지출을 Y 라고 할 때 상품 i 수요의 상품 j 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epsilon_{ij} = (p_j/\tilde{x}_i)\partial^2 e(p, u(p, Y))/\partial p_i\partial p_j, \quad i, j = 1, 2. \quad (4.17)$$

이러한 제약조건은 Samuelson(1974)에서와 같이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지표를 화폐가치로 측정 가능(money-metric scaling)하게 하기 위하여 효용 변화를 기준가격하에서 소득 (또는 지출)의 변화로 측정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조건하에서 normalized quadratic 지출함수 식 (4.15)를 가격벡터에 대하여 편미분하여 상품별 Hicksian 수요함수를 각각 유도하고 시계열 자료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줄이기 위하여 양변에 p_i^t/Y^t 를 곱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지출배분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한국경제의 1970~2004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IV-5> 소비자 행태 모형의 모수 추정치(1970~2004): 일반소비 vs. 여가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A1	0.00241	0.00202	1.19400
D1	0.00024	0.00012	1.99460
B1	0.93968	0.01723	54.54710
A11	-0.07481	0.12093	-0.61860

주: 모형 추정의 표본은 1970~2004년임.
연간 시간부존 3,000시간 가정

<표 IV-6> Normalized Quadratic 수요의 평균탄력성(1970~2004) : 일반소비 vs. 여가

	일반소비재	여가	실질소득(효용)
일반소비재	-0.00586	0.00586	0.97233
여가	0.08272	-0.08272	1.93023
지출	-	-	1.05872

2. 자본과세의 효율비용

가. 분석모형 설정

법인세 등 자본과세는 기업의 투자행위 및 자본 등 생산의 각종 투입요소 사용패턴을 왜곡하고, 이러한 조세왜곡(tax distortion)은 경제의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인 사용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변화시켜 경제적 추가 비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자본과세의 부과에 따른 생산부문의 효율비용의 크기는 앞 절의 상품과세 및 노동과세의 정태모형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그 기본 원리는 기업의 요소 수요와 상품공급 행태가 조세에 반응하는 탄력성 및 조세의 크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앞 절의 일반상품 및 노동과세의 효율비용의 계량경제학적 추정(econometric estimation)방법은 기존의 단일점(single data point) 자료에 의거한 모형캘리브레이션 및 CGE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순히 계산된 효율비용 계산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절의 실증분석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매기별로 투자와 자본을 고정요소로 취급하는 정태모형의 구조와 성격을 가져, 자본과세의 효율비용을

기타 조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문헌에서와 같이 분석모형에 조세가 내구적 투입(durable inputs)으로서 자본사용 및 동태적 자본축적에 미치는 과정이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되는 경우(특히 개방경제에서) 자본과세는 노동과세 대비 그 효율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절에서는 앞 절의 소비 및 노동부문의 조세 효율비용 추정에 보완하여 Diewert and Lawrence(2002)가 호주경제에 적용한 자본과세의 효율비용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자본과세의 동태적 효율비용을 추정한다.

먼저 가변이윤함수 식 (4.11)에서 고정요소벡터 s 중 통상적 자본요소 K 를 분리하고 토지나 기타 재생불능(non-reproducible) 고정요소를 F 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식 (4.18)과 같이 경제의 현금흐름(cash flow) 이윤함수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pi(p, K, F, t) = \max_y \{ p \cdot y : (y, K, F) \in Y^t \} \quad (4.18)$$

여기서, 기업은 앞에서와 같이 매기 초의 자본스톡 K 와 고정투입요소 F 하에서 $p \cdot y$ 를 극대화하도록 순산출 벡터 $y = (y_1, y_2, y_3, y_4)$ 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기업이 동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 균형을 다음과 같은 균제상태의 자본최적화 문제(steady-state capital optimization problem)를 만족하도록 자본스톡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식 (4.18)에서 Diewert and Lawrence(2002)에서와 같이 기업의 동태적 자본스톡 수준의 선택은 다음의 순지대 이윤(pure rents profit)을 극대화하는 방식, 즉 $\max_K \{ \pi(p, K, F) - (u + w)p_5 K \}$ 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단, 여기서 u 는 자본사용의 이자 및 감가상각 비용을 포함하는 자본비용, w 는 자본가치 대비 자본 관련 세수의 비율로 측정한 평균자본소득세율 빼기). 그러면 자본과세가 존재할 경우의 자본수요 $K(w)$ 는 다음과 같이 순지대 이윤함수 $\Pi(p, (u+w)p_5, F)$ 을 세후 자본가격 $V = (u+w)p_5$ 로 편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K(w) = -\partial \Pi(p, (u+w)p_5, F) / \partial V \quad (4.19)$$

그리고 자본과세 w 가 존재할 경우 사회 잉여함수(surplus function) $S(w)$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w) = \Pi(p, (u+w)p_5, F) + w p_5 K(w) \quad (4.20)$$

여기서 분석경제의 법인세 등 자본과세 사회적 비용을 $C(w)$ 을 조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최적 산출물 가치와 조세왜곡하의 산출물 가치의 차이인 $C(w) = S(0) - S(w)$ 로 정의한다면, 식 (4.20)으로부터 자본과세 w 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MC(w) = \partial C(w) / \partial w = -w p_5 [\partial^2 \Pi(p, (u+w)p_5, F) / \partial V^2] p_5 \quad (4.21)$$

또한 자본과세 세수가 $R(w) = w p_5 K(w)$ 이므로 자본과세 w 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세수의 한계편익은

$$MB(w) = \partial R(w) / \partial w = p_5 K(w) + w p_5 \partial K(w) / \partial w \quad (4.22)$$

그러면, 이상에 따라 자본과세 w 의 세율 인상에 따른 한계효율 비용(marginal efficiency cost)의 측정지표 $MEC(w)$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EC(w) \equiv \frac{MC(w)}{MB(w)} \quad (4.23)$$

이러한 자본과세 한계효율비용의 추정은 순지대 이윤함수 $\Pi(p, (u+w)p_5, F)$ 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고 매기별 자본의 한계효용은 실측치에서 평가하여 구할 수 있게 된다.

나. 계량경제학적 추정

먼저 이상과 같은 법인세 등 자본과세의 변화에 따른 효율비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생산기술 구조를 반영하는 경제의 투입과 산출 관련 생산함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분석모형의 설정에서 Harberger(1962)의 법인과세 이론을 현실에 응용한 Shoven and Whalley(1984)형의 통상적인 CGE 캘리브레이션 접근방법은 단일점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앞 절에서와 같이 Jorgenson and Yun(1991), Diewert and Lawrence(1996, 2002) 등과 같이 신축적 함수형에 근거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앞 절의 소비재, 수입재 및 노동에 대한 과세의 효율비용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과세에 의한 경제의 효율손실(조세효율 비용)은 자본과세 켜기의 크기뿐만 아니라 민간부분 생산자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태탄력성의 크기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행태탄력성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1997~2004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순지대 이윤함수 $\Pi(p, (u+w)p_5, F)$ 로부터 도출되는 민간부문 생산자의 공급 및 수요 방정식 체계(system of private producer supply and demand equations)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립방정식들로 구성된 산출물 공급 및 투입물 수요와 관련된 각종 행태탄력성값에 보증되지 않은 특정의 사전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은 신축적인 생산기술을 모형화한다.

본 모형의 산출물과 투입물은 앞 절의 분류에서와 같이, 특정 시점 t 기에 단순히 일반소비재(aggregate good), 수출재, 수입재, 노동(또는 여가), 그리고 자본(토지 등 고정자본을 제외)의 5가지 상품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다만, 여기서는 주어진 가격벡터하에서 동태적 자본수요가 선택변수가 되며, 가변이윤함수는 앞에서 정의된 순지대 이윤함수로 표현한다.

여기서 순지대 이윤함수 $\Pi(p, (u+w)p_5, F)$ 는 실제로 앞 식 (4.11) 또는 (4.18)의 가변이윤함수를 통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i(p, (u+w)p_5, F) \equiv \max_K (\pi(p, K, F) - (u+w)p_5 K) \quad (4.24)$$

위 식 (4.24)에서 한국경제의 실증분석에서는 먼저 기계, 장비, 건축 및 구조물 등의 통상적 자본 이외에 토지 및 기타 고정요소 F 는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모형을 통하여 F 는 생략가능하며 자본서비스 가격 $ps_5 \equiv (u+w)p_5$ 로 하여 가격벡터 $p = (p_1, p_2, p_3, p_4, ps_5)$ 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일단 순지대 이윤함수 $\Pi(p, t)$ 의 함수형을 선택한 후, 이 함수를 가격벡터 p 에 대하여 각각 편미분하여 Hotelling's

lemma를 적용하면 다음 식 (4.25)과 같이 상품 i 에 대한 순공급 (net supply)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x_i(p, t) = \partial \Pi(p, t) / \partial p_i, \quad i = 1, 2, 3, 4, 5 \quad (4.25)$$

또한 앞 절의 소비재, 수입재 및 노동에 대한 과세의 효율비용 추정 모형에서와 같이 순지대 이윤함수 $\Pi(p, t)$ 의 함수형은 모형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기술의 적정 정규성 조건(curvature conditions)을 충족시키도록 일종의 normalized quadratic 신축적 함수형을 선택하였다.

$$\Pi(p, t) = pb + pd(t-1) + \frac{1}{2} p A p / (p g) \quad (4.26)$$

여기서 $b = (b_1, \dots, b_5)$ 와 $d = (d_1, \dots, d_5)$ 는 추정모수 벡터이며 $A = [a_{ij}] \quad i, j = 1, \dots, 5$ 는 추정모수 대칭행렬이다. 그리고 순산출 관련 고정모수 벡터 $g = (g_1, \dots, g_5)$ 는 순산출 벡터 관측치의 표본 평균에서 $p^* g = 1$ 을 만족시키도록 미리 정규화되었으며, 스칼라 추세변수 t 는 기술 변화(technological change)를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 정의한다. 또한 식 (4.26)의 순지대 이윤함수 $\Pi(p, t)$ 가 가격벡터에 볼록(convex)하다는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정규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A = U U^T$ 와 $U^T p^* = 0$ (단, U 는 하위삼각행렬)을 만족시키도록 추정하였다.

한편, 위 normalized quadratic 순지대 이윤함수 식 (4.26)을 가격벡터 p 에 대하여 편미분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t=1, 2, \dots, 35$ 에 대하여 경제의 순산출 벡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

$$y(p, t)^t = p + d(t-1) + A p^t / (p^t g) - \frac{1}{2} p^t A p^t g / (p^t g)^2 + \epsilon^t. \quad (4.27)$$

또한 위 식 (4.27)의 연립방정식 체계의 모형 추정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줄이기 위하여 양변에 p_i^t / Y^t 를 곱하여 지출배분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변환하고 국민계정자료, 각종 세율자료 등 과거 한국경제의 1970~2004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표 IV-7> 자본 포함 생산 모형의 모수 추정치(1970~2004)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F1	1.5629	0.1066	14.6559
G1	0.1105	0.0154	7.1635
H1	0.2607	0.0462	5.6390
I1	0.4423	0.0337	13.1293
J1	0.0839	0.0274	3.0643
L1	0.2557	0.0741	3.4483
A21	0.4020	0.5266	0.7633
A31	-0.3283	1.1161	-0.2941
A41	4.2292	1.1288	3.7466
A51	0.6980	0.1162	6.0073
A32	2.4467	1.1020	2.2202
A42	-0.1439	0.9901	-0.1453
A52	0.0548	0.1438	0.3811
A43	0.2962	0.5928	0.4996
A53	-1.0216	0.1145	-8.9238
A54	0.0068	3.4829	0.0020
F2	-0.7212	0.3082	-2.3405
G2	-0.1334	0.0350	-3.8063
H2	-0.3781	0.1234	-3.0637
I2	-0.1575	0.0928	-1.6974
J2	-0.7988	0.0807	-9.8973
L2	-2.1596	0.2345	-9.2078
F3	0.1242	0.0966	1.2846
G3	0.0936	0.0133	7.0401
H3	0.1749	0.0422	4.1452
I3	0.2419	0.0327	7.3968
J3	0.6850	0.0257	26.6138
L3	1.1128	0.0708	15.7080
F4	-0.4117	0.1364	-3.0184
G4	-0.0740	0.0171	-4.3368
H4	-0.1242	0.0559	-2.2231
I4	-0.3722	0.0409	-9.1087
J4	-0.2857	0.0352	-8.1257
L4	-0.7309	0.0968	-7.5465
F5	-0.5221	0.0056	-92.9661
G5	-0.0115	0.0028	-4.1109
H5	-0.0143	0.0039	-3.7021
I5	-0.0095	0.0029	-3.3393
J5	0.0008	0.0016	0.5293
L5	-0.0007	0.0040	-0.1661

3.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 추정 결과

본절에서는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1970~2004년 사이의 시계열 자료에 근거하여 구축한 소비자 및 생산자 행태 모형과 일반소비과세, 수입과세, 노동과세, 자본과세 등 세목별 세부담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주요 세목별 조세 효율비용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한다.

일반소비, 수출, 수입, 투자, 노동, 자본 등 주요 거시변수별 가격, 수량 및 가치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추적하고, 이들 수량변수에 대한 소비자(수요자)에 의하여 지불된 가격과 생산자(공급자)에 의하여 수취된 가격의 쐐기(wedges)로서 조세부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또한 매기별 균형을 가정한 정태모형에서 자본 등 저장변수와 유량변수를 구분하여 시계열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산출물은 매기별로 생산되고 소비되어 상대적으로 그 수량과 가격으로 나누어 파악하기 용이하나, 자본 등 일부 투입물과 내구재는 상대적으로 그 저장변수를 유량변수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은행의 연간 국민계정 자료와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가계조사연보)에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단일상품을 가정하는 단순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수출재 및 수입재를 일반소비재와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Diewert and Lawrence(1996, 2002)에서 적용한 Kohli(1978, 1993)의 방법에서와 같이, 거시적으로 단일 상품이라도 수출, 수입, 소비 등으로 분류된 총량변수(aggregate variables)는 그 구성의 세부 상품 조합이나 유통마진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각각의 가격지수가 일반적으로 상이하므로 모형에서 별개의 상품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Kohli(1978)와 Diewert and Lawrence(1996, 2002)에서와 같이 모든 수입품을 일단 경제의 생산부문 투입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

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나라에 속하므로 수출 및 수입가격은 모형 시뮬레이션에 있어 세계 가격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한편 앞의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소비, 수입, 노동에 대한 과세의 효율비용 추정에서는 경제의 투자 및 자본축적 결정 과정을 모형화하지 못하고 매기별로 외생적으로 가정하는 정태모형의 한계를 지니게 되어 이러한 틀에서는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영(zero)이다. 이에 비록 완전하고 일관된 일반균형의 분석 틀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태모형에서 분리하여 제2절의 모형에서와 같이 기업의 생산부문에 미치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자본과세의 효율비용을 보완적으로 추정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시점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자본과세의 경우는 Ballard et al.(1985), Jorgenson and Yun(1991), Diewert(1985, 1988)에서와 같이 대체로 조세 효율비용이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 또한 Diewert(1985)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자본과세의 동태적 조세 효율비용은 이에 대응하는 정태적 개념의 효율비용의 할인된 현재가치의 합보다 일반적으로 크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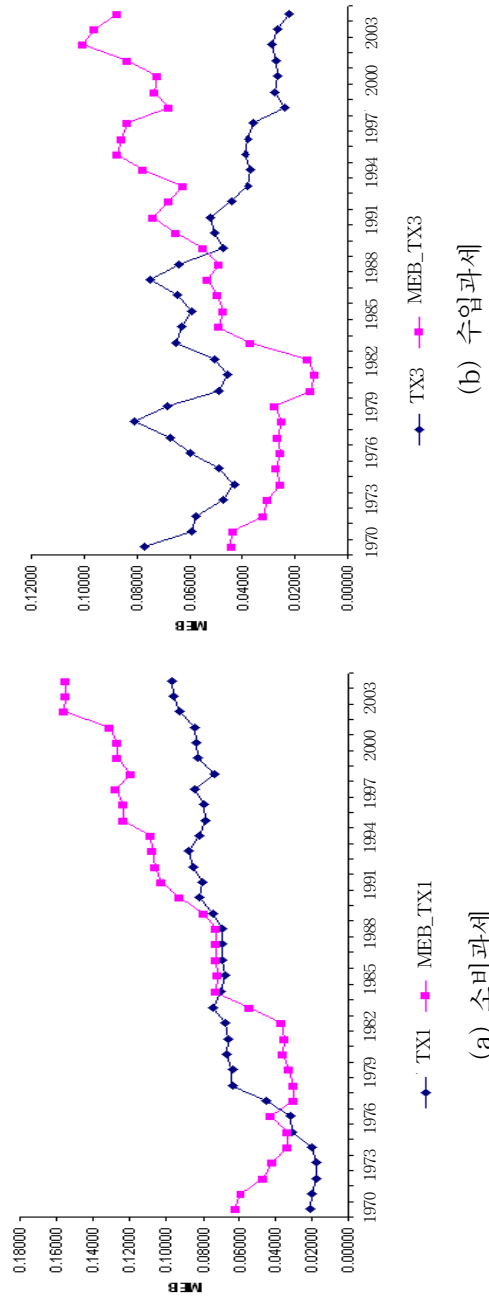
다음 [그림 IV-1]은 분석모형에 사용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범주별 실효세율 추이와 한계효율비용 추정치의 추이를 1970~2004년의 매기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분석기간 동안 주요 세목 범주별 실효세율의 변화에 비교하여 해당 한계효율비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 2004년에 이르는 동안 노동과세 및 자본과세의 경우는 완만한 실효세율 변화에 대비하여 조세의 한계효율

9) 더욱이 모형에서 자본축적 과정이 동결되어 제한될 경우, 기타 각종 행태변수의 추정치들이 동시에 다소 하향 편의적으로(biased downward) 추정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효율비용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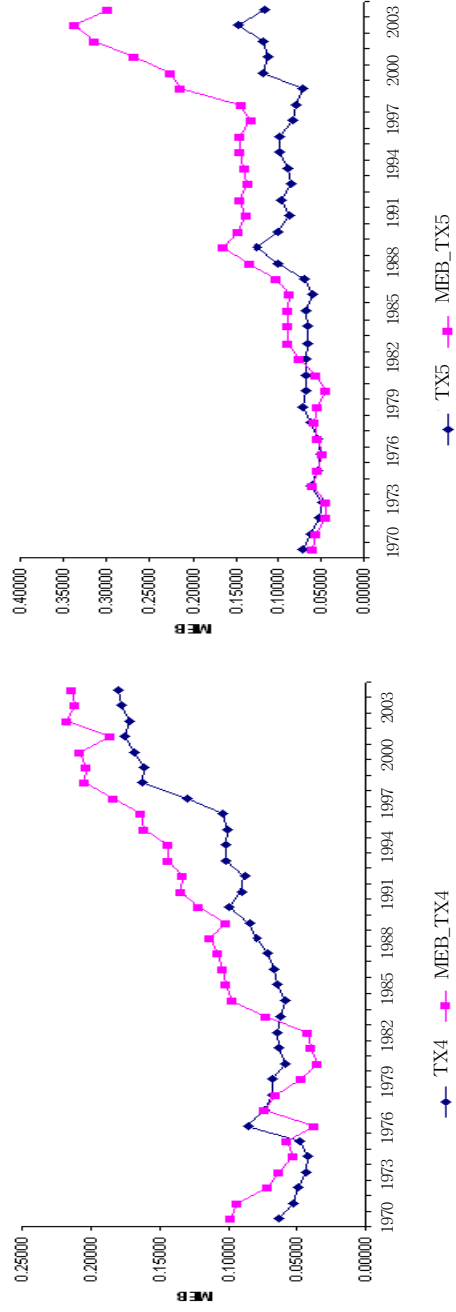
비용이 각각 16.7%에서 21.2%, 그리고 13%에서 29%로 다소 급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세목 범주별 조세의 한계효율비용 추정치는 세부 세율구조 개편, 각종 공제나 비과세·감면조항 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실효세부담 구조가 매기별로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동시에 단순부분균형의 틀과는 달리 일반균형의 틀에서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각종 행태탄력성이나 관련 생산기술 구조와 소비패턴 변화, 기타 경제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 크기가 다소 복잡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위에서와 같이 노동과세 및 자본과세의 경우 그 실효세율 변화 대비 한계효율비용의 변화 추세가 다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은 한국경제의 경제주체 행태 변화가 시장변수에 보다 탄력적이고 반응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어온 경제구조의 변화와 대외 개방화의 진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IV-1] 주요 세목별 실효세율과 한계효율비용(1970~2004)



[그림 IV-1]의 계속



(c) 노동과세

(d) 자본과세

다음 <표 IV-8>는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범주별 한계효율비용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의 분석 대상기간인 1970~2004년의 매기별로 추정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여기서 처음 세 가지 열은 각각 제1절에서의 소비과세, 수입과세, 노동과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의 한계효율비용 혹은 한계초과부담 $MEC(\tau_1)$, $MEC(\tau_3)$, $MEC(\tau_4)$ 의 매기별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소비재, 수입재, 노동에 대한 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모두 상당부분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기간인 1970~2004년의 전체 기간 동안의 표본평균(sample average)은 일반소비의 경우 8.2%, 수입의 경우 5.7%, 노동의 경우 11.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원칙적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프로젝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추가적인 효율 손실로서 경제주체의 행위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효율비용은 정부프로젝트의 단순금액에 추가된다. 가령, 노동에 대한 과세로부터 발생하는 한계효율비용이 11.1%라면 이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지출 1원의 재원조달의 비용은 단순히 1원이 아니라 1.111원이 된다. 이러한 경우 노동과세로부터 재원조달되는 정부프로젝트는 Findlay and Jones(198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 프로젝트 혜택의 실질 수익률이 최소한 그 조달자금 가치의 11.1%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소비재, 수입재, 노동에 대한 과세로부터 조달되는 각각의 정부프로젝트는 1970~2004년의 분석기간에 걸쳐 최소한 그 한계효율비용인 8.2%, 5.7%, 11.1% 이상의 실질적인 정상수익률을 가져야 조세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주요 세목 범주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일반소비의 경우 15.5%, 수입의 경우 9.6%, 노동의 경

IV.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 모형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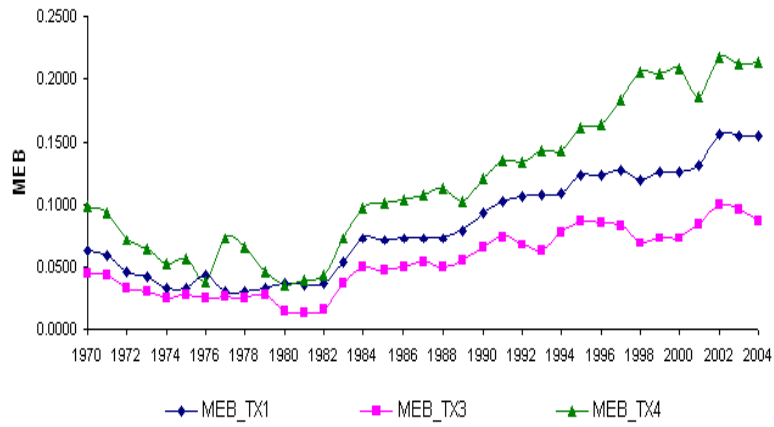
우 21.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가 노동과세, 소비과세, 수입과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러한 소비 관련 과세로의 세원이동 및 과세기반 확대가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생산자 행태 부문 중심의 준일반균형적 구도하에서 별도로 추정된 자본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증가되어 왔으며 최근 2004년 약 30% 정도에 이르고 있어, 기타 세목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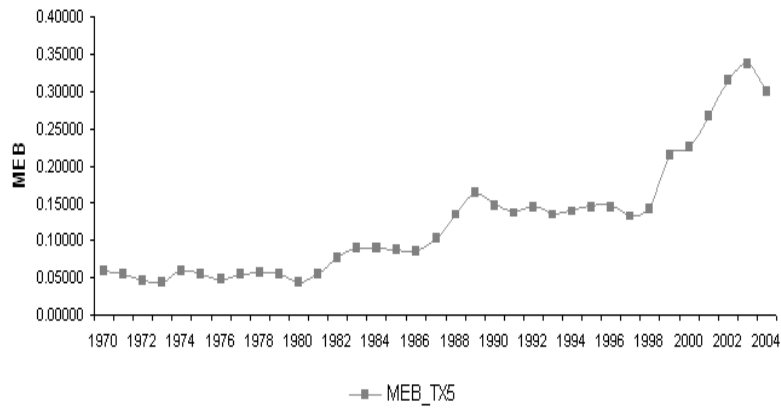
<표 IV-8> 한국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 추정치(1970~2004)

연도	일반소비 MEB_TX1	수입 MEB_TX3	노동 MEB_TX4	자본 MEB_TX5
1970	0.06249	0.04435	0.09932	0.05892
1971	0.05899	0.04205	0.09160	0.05489
1972	0.04611	0.03262	0.07169	0.04487
1973	0.04152	0.02879	0.06184	0.04372
1974	0.03287	0.02249	0.04830	0.05883
1975	0.03282	0.02322	0.04884	0.05377
1976	0.04236	0.02986	0.06484	0.04756
1977	0.02960	0.02102	0.04372	0.05350
1978	0.02980	0.02141	0.04270	0.05756
1979	0.03229	0.02311	0.04541	0.05339
1980	0.03585	0.02565	0.05041	0.04455
1981	0.03483	0.02493	0.04898	0.05494
1982	0.03681	0.02634	0.05177	0.07544
1983	0.05355	0.03657	0.07259	0.08832
1984	0.07312	0.04897	0.09762	0.08838
1985	0.07194	0.04818	0.09604	0.08797
1986	0.07272	0.04870	0.09708	0.08565
1987	0.07269	0.04869	0.09705	0.10189
1988	0.07280	0.04876	0.09719	0.13384
1989	0.07983	0.05531	0.10246	0.16468
1990	0.09323	0.06566	0.12157	0.14681
1991	0.10311	0.07398	0.13489	0.13704
1992	0.10635	0.07631	0.13913	0.14458
1993	0.10755	0.07716	0.14069	0.13570
1994	0.10898	0.07785	0.14366	0.13891
1995	0.12321	0.08731	0.16121	0.14519
1996	0.12399	0.08787	0.16223	0.14530
1997	0.12767	0.09048	0.16705	0.13295
1998	0.11939	0.08461	0.15621	0.14302
1999	0.12658	0.08970	0.16562	0.21488
2000	0.12671	0.08980	0.16579	0.22581
2001	0.13118	0.08402	0.18606	0.26781
2002	0.15607	0.10055	0.21795	0.31458
2003	0.15510	0.09621	0.21200	0.33735
2004	0.15529	0.09633	0.21226	0.29896
평균	0.08221	0.05654	0.11188	0.12519

[그림 IV-2] 한국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1970~2004): 일반소비, 수입, 노동과세



[그림 IV-3] 한국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1970~2004): 자본과세



V. 결 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성(efficiency)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에 있어 단순 캘리브레이션 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다소 자의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한국 경제의 1970~2004년의 역사적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major tax categories)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행 조세제도를 세목별로 비교 평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70~2004년의 과거 35년 동안 일반소비과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6.2%에서 15.5%, 수입과세의 경우는 4.4%에서 9.6%, 노동과세의 경우는 9.9%에서 21.2%, 그리고 자본과세의 경우는 5.9%에서 29.8%로 각각의 실효세율 변화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는 본 연구의 모형에서 단순히 주요 세목별 실효세율 변화와 더불어, 효율비용 추정모형에서 허용된 분석경제의 생산기술 및 소비패턴과 관련된 각종 행태탄력성의 변화와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범주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200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가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

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평가한다면 자본과세나 노동과세 등 소득 관련 과세에서 소비 관련 과세로 세원을 이동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 효율비용의 계량경제학적 추정에 대한 부분균형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일반균형 접근에서 이론적 엄밀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성(주로 세수와 경제적 후생 측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모형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 각종 모형의 탄력성 변수에 각종 사전적 제약조건을 가하지 않는 신축적인 행태방정식들을 사용하였다. 동시에 분석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제 실증자료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추정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일반균형적 구도하에서 주요 세목 간 효율비용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주로 시계열적 거시 총량자료에 의존하고 단일 소비자를 가정하며 대체로 큰 범주의 상품총계 방법을 사용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모형의 조세 효율비용 추정을 위한 세목별 암묵적 유효세율의 경우 그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세제의 누진적 요소에 의한 효율비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상품별, 세목별, 그리고 소비자 그룹별로 관련 분석을 심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시적인(micro-based) 조세패널 자료를 이용한 조세제도의 효율성 평가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행단계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성태 · 이인실 · 안종범 · 이상돈, 『한국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1999.
- 김승래,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 효과』,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Abbott, M and O. Ashenfelter, “Labor Supply, Commodity Demands and the Allocation of Tim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3(135) 1976, pp. 389~411.
- Altig, D., A.J. Auerbach, L.J. Kotlikoff, K.A. Smetters, and J. Walliser, “Simulating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2001, pp. 574~585.
- Auerbach, A.J., “The Theory of Excess Burden and Optimal Taxatio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 Auerbach and Feldstein, (eds.) Amsterdam: North Holland, 1985, pp. 61~127.
- Blackorby, C., D. Primont, and R.R. Russell, *Duality, Separability, and Functional Structure: Theory and Economic Applications*, North-Holland, 1978.
- Ballard, C.L., “Marginal Welfare Cost Calculations: Differential Analysis vs. Balance-Budget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 1990. pp. 263~76.
- Ballard et al., “General Equilibrium Computations of the

- Marginal Welfare Costs of Tax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75(1), 1985, pp. 128~138.
- Ballard, C.L., D. Fullerton, J. B. Shoven, and J.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ax Policy Evalu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Banks, J., R. Blundell, and Arthur Lewbel, “Tax Reform and Welfare Measurement,” *The Economic Journal* 106, 1996, pp. 1227~1241.
- Barrett, W., “The Joint Allocation of Leisure and Goods,”
Econometrica 47(3), 1979, pp. 539~563.
- Blundell, R. and I. Walker, “Modelling the Joint Determination of Household Labor Supplies and Commodity Demands,”
The Economic Journal 92, 1982, pp. 351~364.
- Bovenberg, A.R. and De Mooij,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pp. 1085~1089.
- Browning, M and C. Meghir, “The Effects of Male and Female Labor Supply on Commodity Demands,”
Econometrica 59(4), 1991, pp. 925~951.
- Corlett, W.J. and D.C. Hague, “Complementarity and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1, 1953, pp. 21~30.
- Deaton, A., “Optimal Taxes and the Structure of Preferences,”
Econometrica 49, 1981, pp. 1245~59.
- Deaton, A. and J. Muellbauer,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70(3), 1980 pp. 312~326.

- Diewert, W.E., "The Measurement of Deadweight Loss Revisited," *Econometrica* 49(5), 1981, pp. 1225~1244.
- Diewert, W.E., "A Dynamic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Waste in an Open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 1985, pp. 213~240.
- Diewert, W.E., "On Tax Reform,"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1(1), 1988, pp. 1~40.
- Diewert, W.E., D.A. Lawrence, and F. Thompson, "The Marginal Costs of Taxation and Regulation", In: *Handbook of Public Finance*, 1998.
- Diewert, W.E., and D.A. Lawrence, "The Deadweight Costs of Taxation in New Zealand,"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 1966, S659~S677.
- Diewert, W.E., and D.A. Lawrence, "The Deadweight Costs of Capital Taxation in Australia," Kevin J. Fox (eds.) Ch.4,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 Findlay, C.C and R.L. Jones, "The Marginal Cost of Australian Income Taxation," *The Economic Record* 58(162), 1982, pp. 253~262.
- Fullerton. D., "Reconciling Recent Estimates of the Marginal Welfare Cost of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1(1), 1991, pp. 302~308.
- Hanemann, M. and Edward Morey, "Separability, Partial Demand Systems, Consumer's Surplus Measur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2(3), 1992, pp. 241~258.

- Jorgenson, D.W., “Econometric Methods for Modelling Producer Behavior,” Z. Griliches and M.D. Intriligator, (eds.), *Handbook of Econometrics*, Vol. 3, Amsterdam, North-Holland, 1986, pp. 1842~1915.
- Jorgenson, D.W. (ed.), *Welfare: Measuring Social Welfare*, Vol. 1&2, The MIT Press, 1997.
- Jorgensen, D.W. and K.-Y, Yun, “Tax Reform and U.S.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pt.2, 1990, pp.151~193.
- Jorgenson, D.W. and K.-Y, Yun, “The Excess Burden of U.S. Taxation,”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6, 1991, pp. 487~509.
- King, M.A., “Welfare Analysis of Tax Reforms Using Household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1, 1983, pp. 183~214.
- Kim, S.-R., “Environmental Taxes and Economic Welfare: The Welfare Cost of Gasoline Taxation in the U.S. 1959-1999,” *The ICFAI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2(1), 2004, pp. 41~60.
- Kohli, U., “A Gross National Product Function and the Derived Demand for Imports and Supply of Expor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1, 1978, pp. 167~182.
- Kohli, U., “A Symmetric Normalized Quadratic GNP Function and the U.S. Demand for Imports and Supply of Expor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4, 1993, pp. 243~255.
- LaFrance, J., “Weak Separability in Applied Welfare Analysis,”

-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5(3), 1993, pp. 770~775.
- Mendoza, E.G., Assaf Razin, and L.L. Tesar, "Effective Tax Rates in Macroeconomics: Cross-Country Estimates of Tax Rates on Factor Incomes and Consumptio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 1994, pp. 297~323.
- Mohring, H., "Alternative Welfare Gains and Loss Measures," *Western Econ. Journal* 9, 1971, pp. 349~368.
- Sandmo, A., "Optim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Externalities,"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7, 1975, pp. 86~98.
- Slesnick, D.T., "Aggregate Deadweight Loss and Money Metric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2(1), 1991, pp. 123~146.
- Slesnick, D.T., "Empirical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of Welfar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1998.
- Stuart, C., "Welfare Costs per Dollar of Additional Tax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74, 1984, pp. 352~362.

부 록

1. 모형 및 실증분석 자료 정비

본 연구의 조세 효율비용 모형에 관련하여 생산자 행태와 소비자 행태를 추정하기 위한 일반경제부문은 크게 소비지출 측면, 생산 측면, 그리고 분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류하에 한국은행, 통계청, OECD 등에서 각각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거시적 시계열(time-series)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은 일반소비(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 주거,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이 유량(flow) 개념의 통계자료지만 주거와 자동차의 경우 저장(stock)과 유량(flow) 개념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장 자료의 경우 대부분 유량 개념으로 환산하여 작성 및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유량 성격을 가진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모형의 추정에 이용하도록 한다.

가. 한국은행 통계자료 추계방법 및 설명

1) 지출국민소득 자료 추계방법

지출국민소득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지출의 각 부문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추계방법과 생산된 상품의 처분 경로를 따라 지출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간접추계방법이 있다. 예컨대 최종소비지출은 가계지출조사,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의 투자조사, 재고 증가는 생산자재고조사·유통업계의 유통재고조사·원재료재고조사 등에 의해

직접 추계되므로 전체 금액의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세부 상품별로 지출내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간접추계방법은 별도로 조사한 상품별 배분구조(배분비율)를 이용하게 되므로 세부 상품별 구분 용이, 생산과 지출 간 상품 연관관계의 연결 편리, 비교적 정밀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가계소비의 목적별 세분화 가능, 상품별 생산자가격·구매자가격·기준연도가격 기준의 지출액 추계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추계방법과 간접추계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접추계방법인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을 주로 이용하여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출국민소득은 해당 항목의 지출자료나 생산 측면에서 추계한 상품별 산출액을 이용하여 직접추계하는 부문과 수요동향 등을 반영한 상품흐름법에 의해 간접 추계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정부소비지출, 가계소비지출 중 일부 품목,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중 일부 품목, 재고투자 중 생산자재고·농산물재고·선박재고,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등은 관련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추계하고 나머지 부문은 상품흐름법으로 간접추계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음 표는 세부 항목별 추계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부표 1> 지출항목별 추계방법

추계방법	추계부문
직접추계	- 정부소비지출
	- 가계소비지출 중 곡물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 건설투자 중 항공기 및 선박
	- 재고투자 중 생산자재고, 농산물재고, 선박재고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접추계	- 가계소비지출 중 직접추계부문 이외의 재화*
	-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 설비투자*
	- 유통재고

주: *가계소비와 설비투자는 통계청의 품목별 내수출하지수 등 해당 재화의 수요동향 및 주요 내구재(승용차, PC, 무선통신기기 등)에 대한 서베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계

2) 지출항목별 추계방법

최종소비지출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나누어진다. 민간소비는 산업연관표상의 배분 비율에 의해 도출된 품목별 소비금액에 직접 추계가 가능한 일부 품목(곡물, 육류, 담배, 자동차 등)을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품목별 및 전체 가계소비를 추계한다. 정부소비는 정부부문의 산출액(투입비용; 부가가치+중간수요)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 관련 자료상의 판매수입액인 상품·비상품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이에 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 산재보험(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재취업교육비 지출) 등의 사회보장현물수혜¹⁰⁾를 더한 금액을 소비로 기록한다.

총고정자본형성에 있어서 건설투자는 건설업 및 농림어업(영림 등)의 산출액(건물수선 등 제외)에서 건설재고분을 차감하여, 설비투자는 상품흐름법과 직접(항공기, 선박) 구한 기초가격 설비투자액에 세금, 거래 및 운송마진을 사후적으로 합산하여 추계한다. 무형고정자산투자는 상품흐름법으로 구한 총액에 산업연관표상의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광물 탐사와 컴퓨터소프트웨어 각각의 지출액을 추계한다.

재고 증감은 회계기간중의 재고취득액에서 재고처분액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정의되며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뿐만 아니라 유통중에 있는 재고의 변동분도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농림수산물 재고는 국내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곡물, 가축 등의 재고 증감분이 해당되며 벼, 맥류, 정미, 정맥, 육우, 양돈, 가금, 기타임산물 등을 포함한다. 생산자 완성품 재고의 경우 광업 및 제조업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완성품 재고의 변동분으로 통계청의 생산자 p 제품 재고지수를 주로 이용하여 추계한다. 농림수산물 재고와 생

10)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제공한다.

산자 완성품 재고를 제외한 기타 재고는 건물재고, 선박재고, 수입 및 유통재고로 나누어진다. 기타 재고 가운데 선박재고는 산출액에서 투자 및 수출분을 차감하여, 수입 및 유통재고 중 원유재고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추계하고 나머지는 상품흐름법에 의해 잔여분으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재화수출입은 국민계정의 재화 수출입과 국제수지표상의 상품 수출입이 포괄범위 및 평가방법 등에서 일치하고 있으므로 명목 수출입은 국제수지표의 상품 수출입을 원화로 환산하여 이용하고 운수 및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기타 서비스, 비거주자(거주자) 가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 등의 서비스 수출입은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수입 및 지급액을 주로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방법

가) 민간소비¹¹⁾

(1) 포괄범위

(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통상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가계가 구입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가계 최종소비지출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가계가 구입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가계의 주택구입은 주택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이므로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11) 가계의 최종소비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을 더하여 민간소비라고 한다.

가계가 구입한 중고품은 다른 가계가 이를 최초로 구입했을 때 이미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었던 것이므로 제외된다. 반대로 자가 소유자가 스스로 최종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주거서비스(귀속임대료) 등은 가계가 실제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구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가계 최종소비지출에 포함한다.

한편, 1993년 SNA에서는 거주자 가계가 해외에서 지출한 소비도 거주자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하도록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국내 모든 가계(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을 계산한 후 여기에 거주자의 국외소비를 더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소비를 차감하여 얻는다.

(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는 그 구성원이나 다른 가계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일반정부와 마찬가지로 비시장생산자로서 일반적인 시장생산자와는 달리 사회·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상품 또는 비상품 판매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수입)보다 훨씬 큰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차액(총투입비용-판매수입)만큼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를 최종소비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부표 2> 민간소비지출의 포괄범위

구분	포괄범위	
가계소비 ¹⁾	*가계의 국내소비	
	목적별 분류(COICOP) ²⁾	형태별분류
	식료품 및 비주요음료품	- 내구재 가구, 승용차, TV, PC 등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 준내구재 의류 및 신발, 소형가전 등
	가게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 비내구재 음식료품, 수도광열, 휘발유 등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 서비스
	음식숙박	
	기타	
*거주자 국외소비		
*(-)비거주자 국내소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	목적별 분류(COPN) ³⁾ - 의료보건, 오락문화, 교육, 사회복지, 기타	

주: 1) 가계소비=가계의 국내소비+거주자 국외소비+(-)비거주자 국내소비

2)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SNA에서는 생산자와 가계부문의 거래를 '생산물 종류별'로 세분하지
않고 거래참가자의 '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

3) COPN: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

(2) 추계방법

(가) 가게 국내소비지출, 가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지출

① 명목: 당해연도 가격

COICOP 분류별로 구해진 실질 소비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서비스업 산출액 디플레이터 증감률, 농가판매가격지수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명목 소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코드별로 합산하여 명목기준 목적별 소비금액, 형태별 소비금액 및 가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금액을 추계한다.

② 실질: 기준연도 가격

전년 동기 실질 소비금액에 상품흐름법에 따라 산출된 상품별 증감률을 적용하여 당해 분기 실질 소비금액을 구한 후 여기에 상품별 마진율을 곱하여 구매자가격 실질 소비금액을 추계한다. 이 소비금액에 COICOP 분류 가중치를 곱하여 COICOP 분류별 당해 분기 구매자가격 실질 소비금액을 산출하고 코드별로 합산하여 실질기준 목적별 소비금액, 형태별 소비금액 및 가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금액을 추계한다.

한편, 전년 동기 실질 소비금액에 적용하는 상품별 증감률은 기본적으로 상품흐름법에 따라 산출하는데 기초자료를 구할 수 있는 품목¹²⁾은 증감률을 직접적으로 도출한다.

12) 곡물, 육류(도축육), 육류(가금육), 담배, 유류, 자동차, 전기 및 가스

(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① 명목: 당해연도 가격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국제수지통계를 기초로 작성된다. 주로 국제수지통계의 여행수지가 이용되는데 업무상 여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부문을 원화로 환산하여 추계한다.

② 실질: 기준연도 가격

명목 거주자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을 디플레이터로 환가하여 산출한다.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주요 여행대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한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 소비금액을 산출하고, 비거주자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은 소비자물가지수, 외국기관의 국내소비지출은 생산자 물가지수를 각각 이용하여 추계한다.

<부표 3> 민간소비 추계방법(요약)

	실질치	명목치
가계국내소비지출	상품흐름법 이용 최종수요(소비+투자)	실질금액×관련 가격지수 (CPI, PPI, 산출액 디플 레이터, 농가판매가격수 지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지출	= 산출액 + 수입-중간수요- 수출 * 일부 항목 직접추계	
거주자 국외소비 지출	명목금액 ÷ 디플레이터 (주요 여행대상국 CPI, 국내 CPI 및 PPI)	국제수지통계 해당부분 × 환율
비거주자 국내소 비지출		

나) 정부소비¹³⁾

(1) 정의 및 포괄범위

정부는 국민계정 내의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제도부문을 구성하는 일반정부로서의 소비주체이다. 1993 SNA에서 정부는 생산한 산출물 중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판매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최종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소비(최종소비지출)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집행하는 지출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보건·교육 등의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이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정부가 생산한 산출액에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 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액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품·비상품은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과 가계에서 중간투입 및 최종소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정부가 기업 또는 가계에 판매한 수입으로서 국·공립학교의 수업료, 면허 및 수수료, 검사료, 항공항만 수입, 주차료, 입장료, 병원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장 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 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는데 동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에서

13) 정부소비 = 산출액 - 상품 · 비상품 판매수입 + 사회보장현물수혜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가게에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의 재취업 교육에 대한 지출 등이 해당된다.

(2) 추계 방법

① 명목: 당해연도 가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정부가 생산한 산출액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 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우선 정부의 산출액은 정부 하위부문의 산출액을 더하여 구한다. 정부의 하위부문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 중간 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하면 정부 전체의 산출액이 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 생산세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투입은 정부의 전년 동기 중간투입(물간비)에 생산 측면의 당해 분기 중간투입 증감률을 곱하여 추계한다.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분기 중에서 세입 실적자료가 중앙정부에만 입수되므로 전년 동기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에 당해 분기 중앙정부의 세입 중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증감률 및 생산 측면의 정부부문 산출액 증감률을 곱하여 추계한다.

사회보장 현물수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와 근로복지공단의 재취업교육 등에 대한 지출이 해당되는데 건강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 동기 건강보험급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당해 분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금액 증감률을 곱하여 구하고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은 전년 동기 재취업 교육에 교육(비영리)부문의 당해 분기 산출액 증감률을 곱하여 구한다.

② 실질: 기준연도 가격

정부 최종소비지출 중 비교연도의 실질 산출액은 생산 측면의 정부 실질 산출액과 동일하므로 정부 하위부문별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을 더하여 추계하고 있다. 실질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명목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생산 측면의 정부 산출액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사회보장 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 현물수혜를 소비자물가지수 등 해당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추계한다.

<부표 4> 정부소비 추계방법(요약)

		명목	실질	
정부	분기	최종소비	명목산출액-상품·비상품 판매수입+사회보장 현물수혜	실질산출액-상품·비상품 판매수입+사회보장 현물수혜
		산출액	명목중간투입+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실질부가가치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전년동기 상품·비상품 판매수입×분기 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감률	명목상품·비상품 판매수입÷산출액 디플레이터
		사회보장 현물수혜	전년동기 사회보장현물수혜×분기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감률	명목 사회보장 현물수혜÷가격지수(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최종소비	명목산출액-상품·비상품 판매수입+사회보장 현물수혜	실질산출액-상품·비상품 판매수입+사회보장 현물수혜
		산출액	명목중간투입+명목부가가치	실질중간투입+실질부가가치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해당 항목의 합계	명목상품·비상품 판매수입÷산출액 디플레이터
		사회보장 현물수혜	해당 지출의 합계	명목 사회보장 현물수혜÷가격지수(소비자물가지수)

4) 총고정자본형성

가) 정의

기업 등 생산자는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 차량 등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교체한다. 또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장이나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러한 기계·차량 구입이나 공장 등의 건축은 장래에 지속적 수입을 확보하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해 기간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통상 1년 이상)에 걸쳐 생산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고정자산 또는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을 SNA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총고정투자라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자 제도 단위의 회계기간중 고정자산 순취득액(취득액-처분액)과 생산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의 가치 증가액을 포함한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비생산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 이외로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나) 포괄범위 및 분류

(1) 포괄범위

1993년 SNA에서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설비 및 운수장비,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학교 등), 구축물(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및 기

타 건물 등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내구재, 즉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가계가 구입한 주거용 건물이 냉장고, 자동차 등 다른 내구재와는 달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주거용 건물이 임차나 자가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등 비생산자산과 미사일, 전함, 전투기, 탱크 등 파괴용 무기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제외된다.¹⁴⁾ 다만, 군사용 자산 중에서 민간이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 항만, 도로, 군사용 건물 및 병원 등의 건설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된다. 한편, 유형고정자산의 일종으로서 번식용 가축(종축), 젖소(낙농축), 운반용 소(역축), 과수 등의 육성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간주된다. 이들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계설비나 운수장비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1년 이상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내구재)의 개조 또는 개량을 위한 지출, 즉 자본적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다만, 소규모 수선과 같은 경상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 시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 경우 이 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이후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동질의 페인트를 다시 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상적 지출로 보아 주택 소유산업의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셋째,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광물 탐사, 오락·문화작품·예술품 원본 등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간주된다.

14) 이들은 중간소비로 처리된다.

넷째, 토지의 개간과 개량, 임야·광산·대규모 농장 등 유형 비생산자산의 확장이나 개발, 토양의 악화 방지 등 유형 비생산자산의 가치 증대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한다.

다섯째, 토지·광산·임야 등 유형 비생산자산¹⁵⁾의 경우 거래액 자체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는 고정자본형성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비금융자산 중에서 생산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자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매수수료, 세금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의 범주에 포함된다.

<부표 5> 총고정자본형성의 포괄범위

구분	포괄범위
유형고정자산	기계설비 및 운수장비,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상가, 공장, 학교 등), 구축물(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및 기타건물 중축, 낙농축, 역축, 과수 등의 육성자산
유형고정자산의 개조·개량	생산성 향상 또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개조 또는 개량(자본적 지출)
무형고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광물 탐사, 오락·문학작품·예술품 원본, 기타 무형고정자산
유형 비생산자산의 개량 및 개발 등	토지의 개간 및 개량, 임야·광산·대규모농장 등 유형 비생산자산의 확장이나 개발 토양의 악화 방지 등(자본적 지출)
유형 비생산자산의 소유권 이전비용	유형 비생산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매수수료, 세금 등 제반 비용

15)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토지와 석탄·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비금속광물 등의 지하자원을 말한다.

<부표 6> 총고정자본형성의 자본재 형태별 분류

구분		세분류	
	운수장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	
설비투자	기계류	일반기기,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기타기계장치, 종축·역축·낙농축 등	
건설투자	건물	주거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
		비주거용	상가, 공장, 학교, 관공서 건물, 공연장, 창고 등
	토목	구축물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하천사방, 상하수도,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
		기타	과수등의 조립, 토지거래 부대비용 등
무형고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포함), 광물 탐사	

다) 추계방법

총고정자본형성(총고정투자)은 소비, 수출 등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출항목의 하나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단기적으로 자본재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요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스톡의 축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되는 시점은 1993 SNA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때이다.¹⁶⁾ 따라서 자가계정으로 생산한 자산을 제외하면

16)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재고로 기록한다.

고정자산이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되는 시점은 해당 자산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실제로 생산에 사용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물, 구축물 등은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이 공정 단계별로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 단계별 산출물의 가액을 구매자의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는 건설재고로 기록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회계기간 중 생산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고정자산의 가치 증가액을 포함한 고정자산 순취득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의 가격은 상품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마진, 운송 및 설치비용과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측량기사, 기술자, 건축가, 법률가, 부동산 중개인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와 소유권이전 관련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구매자가격이란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를 받기 위해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으로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며 물품대금 외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운송료를 포함한다.

총고정자본형성 구성항목 중 설비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의 추계는 생산 측면의 산출액, 수입액, 산업연관표의 중간수요율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상품흐름법을 채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측면의 건설업 산출액 추계 결과를 이용한다.

<부표 7> 총고정자본형성 추계방법

	실질	명목
건설투자	실질건설업산출액(생산자가격)-실질건물수선+실질영립산출액+실질부대비용 - 실질건설제고	명목건설업산출액(생산자가격)-명목건물수선+명목영립산출액+명목부대비용 - 명목건설제고
설비투자	* 상품흐름법 이용 소비+투자=산출액+수입-중간수요-수출	실질금액×관련가격지수, 산출액 디플레이터 등
무형고정자산투자	* 부대비용을 더하여 구매자 가격 기준으로 전환	

5) 재고 증감

가) 포괄범위

재고 증감은 농축임산물재고, 생산자재고, 건물재고, 선박재고, 원재료 및 유통재고 등으로 나누어 추계하고 있다. 재고 증감에는 생산자가 보유하는 재고뿐만 아니라 유통중에 있는 재고 변동과 인공조립의 임목생장액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분양건물의 재고변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연자산의 증감분이나 소비주체(가계)가 보유하는 재고 변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표 8> 재고증감의 포괄범위

구분	포괄범위
농축임산물재고	농업, 축산업, 임업
생산자재고	석유제품, 금속제품, 산업용화학물, 반도체 및 전자제품 등
기타 재고	건물재고, 선박재고, 원재료 및 유통재고 등

나) 추계방법

재고 증감¹⁷⁾은 상품흐름법,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 생산소비시차¹⁸⁾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유통재고, 농산물재고, 선박재고 등은 상품흐름법에 의해 추계되며 생산자재고, 축산물재고, 원유재고, 건물재고 등의 추계는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임업 등은 생산소비 시차를 이용한다.

6)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가) 정의

국내부문(거주자)과 국외부문(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국외거래라고 하며 이를 기록하는 계정을 국외거래계정¹⁹⁾이라고 한다. 국외거래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거래, 배당금 및 이자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소득이전거래,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상이전거래로 구분된다. 자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투자 및 자금대여 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 중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자금수수가 발생한 거래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제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17) 재고 증감 = 기간중 산출액 × 재고율

여기서 재고율은 산업생산통계(통계청) 품목별 물량을 이용한다.

재고율 = 재고증감량 / 생산량 = (금기말 재고스톡-전기말 재고스톡) / 금기중 생산량

18) 임산물의 경우 생산시기와 소비시기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생산과 소비를 분기별로 배분하고 각 시점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차를 재고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기에는 연간 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소비로 추정하고 나머지를 재고로 추계한다.

19) 국외거래계정의 거래주체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는데 이의 구분은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냐를 기준으로 한다.

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주자에게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비거주자의 생산에 의존(수입)하거나 비거주자에게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거주자가 생산(수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하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로 기록한다.

(1) 상품

상품의 수출입은 일반상품, 가공용상품, 운수조달상품, 상품수리 및 비화폐용 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상품에는 특별한 예외²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품의 수출입거래 대부분이 계상된다.

가공용상품에는 외국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수출(입)한 후 재수입(출)한 상품을 포함하며 가공 전후의 금액을 총액기준으로 계상한다.

운수조달상품에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국외(국내)에서 조달한 모든 상품(연료, 식량 등)이 포함된다.

상품 수리도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과 같은 상품의 수리활동을 계상한다. 한편 상품 수리는 총액기준으로 계상하는 가공용상품과는 달리 순액기준인 수리가액으로 측정한다.

비화폐용 금은 통화당국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한 금(화폐용 금)

20) 소유권이전 원칙의 예외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첫째, 금융리스 대상 상품과 관련된 경우
- 둘째, 기업이 국외지사나 자회사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외의 관계회사로 수출용 상품을 보낸 경우
- 셋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였으나 국외거래에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
- 넷째, 가공할 목적으로 상품을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금 수출입거래를 의미한다. 비화폐용 금은 여타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가치저장용 수단으로 보유하는 금과 기타(공업용)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서비스

서비스의 수출입은 운수 및 통신 서비스, 보험서비스, 기타서비스, 비거주자(거주자)가계의 국내(외) 소비지출, 외국기관(정부)의 국내(외)소비지출로 구분된다.

<부표 9> 국외거래 중 경상거래와 국제수지통계 경상수지¹⁾

국외거래 중 경상거래		국제수지통계 경상수지	
I.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I. 상품 및 서비스수지	
1. 상품의 수출입		1. 상품의 수출입	
• 일반상품	1	• 일반상품	1
• 가공용상품	2	• 가공용상품	2
• 운수조달상품	3	• 운수조달상품	3
• 상품수리	4	• 상품수리	4
• 비화폐금융	5	• 비화폐금융	5
2. 서비스의 수출입		2. 서비스의 수출입	
• 운수 및 통신서비스	6	• 운수 및 통신서비스	6
• 보험서비스	7	• 여행서비스	12,14
• 건설서비스	8	• 통신서비스	6
• 금융서비스	9	• 건설서비스	8
•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0	• 보험서비스	7
• 특허권 등 사용료	11	• 금융서비스	9
• 사업서비스	12	•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0
• 개인·문화·오락서비스	13	• 특허권 등 사용료	11
• 비거주자(거주자)가계의 국 내(외)소비지출	14	• 사업서비스	12,14
• 외국기관(정부)의 국내(외) 소비지출	15	•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13
		• 정부서비스	14,15
II.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6	II. 소득수지	6,12,16
III. 국외순수취경상이전	17	III. 경상이전수지	17

주: 1)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은 국외거래 중 경상거래의 일부로서 작성 기준(거주자 개념, 계상시점, 거래의 평가 및 범위 등)은 국제수지통계 경상수지와 동일하다. 또한 국제수지통계 경상수지는 상품의 수출입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 비거주자와의 서비스거래 결과를 기록한 서비스수지, 근로자가 비거주자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임금과 국외투자자에 의해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 등을 기록하는 소득수지,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는 국제수지통계 경상수지는 GDP 국외거래(경상거래)에서 각각 상품의 수출입, 서비스의 수출입,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경상이전과 대응된다.

나) 추계방법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의 분기 및 연간 추계방법은 동일하며,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수지통계자료(달러화 기준)를 국민소득통계 기준에 맞게 부문 분류를 조성한 후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명목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원화 기준)을 산출한다. 실질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은 이렇게 산출된 명목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원화 기준)에 관련 디플레이터(원화 기준)로 환가하여 추계한다.

<부표 10>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추계방법(요약)

		명목	실질
상품 수출입	분기 연간	국제수지통계 명목상품 수출입(통관통계 조정후) 환율	(달러화기준 국제수지통계 상 품수출입×기준연도 환율)÷원화 기준 상품수출입 디플레이터 (물량연장법, 명목금액환기법)
서비스 수출입	분기 연간	국제수지통계 명목서비 스 수출입(부문분류 조 정후)×환율	(달러화기준 명목 서비스 수출 입×기준연도환율)÷원화기준서 비스 수출입 디플레이터(해당부 문 디플레이터 등)
수입세	분기	전년동기 명목수입세× 관세징수 실적 증감률	실질상품별 수입금액×기준년상 품별 수입세율
	연간	명목수입세	

(1) 통계청 데이터 추계방법 및 설명

다양한 주요경제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은 10대 소비지출 비목²¹⁾ (<부표 10>)을 선정

21)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구조의 다양화로 1982년 1월부터 의료, 교육, 교양오락 등 문화비 부문을 세분화하고 1995년에 교육·교양오락을 교육과 교양오락으로 분리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하였다(통계청 『도시경제연보』).

하고 각 항목별로 공식 발표하고 있다.

<부표 11> 소비지출 비목 및 모형에 따른 소비재 분류

	소비지출 비목		모형 ¹⁾ 에 따른 소비재 분류
	소 비 지 출	식료품	식료품
			주류
주거		주거	주거
광열·수도		광열	광열 ²⁾
		수도	수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교육		교육	교육
교양오락		교양오락	교양오락
교통·통신		교통	교통
			자동차연료 ³⁾
	통신	통신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담배	
		기타소비지출	

- 주: 1) 소비는 주거, 교통, 주류, 담배, 에너지, 그리고 일반소비로 나누어진다. 일반소비는 다시 식료품, 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통신, 그리고 기타소비지출로 나누어진다.
 2) 교통의 자동차연료와 합하여 에너지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3) 교통의 자동차연료는 에너지 항목으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통계청에서는 주거항목을 월세, 주거설비수선재료, 기타주거로 나누어 작성·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발표되고 있는 소비지출비용은 주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월간 플로우 개념으로 환산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거비용으로 월세와 함께 지출되는 보증금과 전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항목에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계청은 이러한 항목들에 한해서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전세금월세평가액, 보증부월세평가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에서는 주거라는 항목에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금월세평가액, 보증부월세평가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모형에서는 소비를 총 6개²²⁾로 나누고 있다. 6개의 큰 항목 중 교통에는 에너지 데이터인 자동차연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교통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연료를 광열과 함께 합산하여 에너지 항목을 다시 산출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작성·발표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종 소비단계의 물가지수로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소비 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516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작성한다.²³⁾ 특히 기본분류 항목 중 주거²⁴⁾는 월세와 전세, 주택설비수리, 그리고 기타 주거로 나누어지는데, 이 때 월세에는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월세는 보증금의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에 월세를 더한 값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이자율이란 월세의 값과 만약 월세를 제공하지 않고 전세를 제공하였을 때의 값을 반영시켜 이자율을 산출한다.²⁵⁾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전세의 경우 전년도 대비 변화율²⁶⁾을 적용하여 전세의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지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

22) 주거, 교통, 주류, 담배, 에너지, 일반소비

23) 통계청 『물가연보』

24)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총 비중은 12%이다.

25) 이자율은 부동산 시세를 최대한 반영시켜 각 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라 다른 값을 적용시킨다. 또한 신규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주거나 자가는 이자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26) 이 때 통계청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부분은 반영시키고 있다.

자 물가지수도 총 6개²⁷⁾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자동차연료가 교통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광열과 함께 가중합산하여 에너지 항목을 산출하였다.

27) 주거, 교통, 주류, 담배, 에너지, 그리고 일반 물가지수

7) OECD 분류에 따른 조세관련 자료 정비

<부표 12> OECD Revenue Statistics 기본 분류(1970~2004)

T O T A L T A X R E V E N U E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1100 Of individuals	1110 On income and profits
			1120 On capital gains
		1200 Corporate	1210 On profits
			1220 On capital gains
		1300 Unallocable between 1100 and 1200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2100 Employees	2110 On a payroll basis
			2120 On an income tax basis
		2200 Employers	2210 On a payroll basis
			2220 On an income tax basis
	2300 Self-employed or non-employed	2310 On a payroll basis	
2320 On an income tax basis			
2400 Unallocable between 2100, 2200 and 2300	2410 On a payroll basis		
	2420 On an income tax basis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4000 Taxes on property	4100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110 Households	
		4120 Others	
	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210 Individual	
		4220 Corporate	

<부표 12>의 계속

T O T A L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4310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4320 Gift taxes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4500 Non-recurrent taxes	4510 On net wealth	
			4520 Other non-recurrent taxes	
	4600 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T A X R E V E N U E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5110 General taxes	5111 Value added taxes
				5112 Sales tax
				5113 Other
				5121 Excises
				5122 Profits of fiscal monopolies
			5120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5123 Customs and import duties
				5124 Taxes on exports
				5125 Taxes on investment goods
				5126 Taxes on specific services
				5127 Other taxes on internat. trade and transactions
	5128 Other taxes			
		5130 Unallocable between 5110 and 5120		

<부표 12>의 계속

T O T A L T A X R E V E N U E		5200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5210 Recurrent taxes	5212 Paid by others: motor vehicles
				5213 Paid in respect of other goods
			5220 Non-recurrent taxes	
		5300 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6000 Other taxes	6100 Paid solely by business		
	6200 Other			

<국문요약>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에 있어 단순 캘리브레이션 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다소 자의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분석의 주요 특징은 모형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 각종 탄력성에 보증되지 않은 제약조건을 사전적으로 가하지 않는 신축적인 행태방정식들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분석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범주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2004년 기준으로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평가한다면 자본과세나 노동과세 등 소득 관련 과세에서 소비관련 과세로의 세원을 이동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Marginal Efficiency Cost of Taxation in Korea: An Econometric Approach

Seung-Rae Kim · Woochul Kim

This study estimates marginal efficiency costs (or marginal excess burdens) of different taxes to the Korean economy, using flexible functional form techniques. Th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here involves a model of consumer behavior, a model of producer behavior, and the marginal efficiency cost model. These models are econometrically estimated for the period 1970~2004 for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latest empirical techniques rather than the guesstimates and restrictive assumptions of typical calibration-based approaches. The efficiency cost of tax increases by major categories in Korea are evaluated using the behavioral elasticities and extensive time-series data over the 35 years in the sample period. In this approach, changes in the size of marginal efficiency costs are attributable to the changes in tax rates,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the economy and factor mobili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ginal efficiency costs associated with increased taxation on consumption, imports, labor, and capital in Korea grew from 6.4%, 4.4%, 9.9%, and 5.9% in

1970 to 15.5%, 9.6%, 21.2%, and 29.8% in 2004, respectively. On efficiency grounds, it implies that shifting tax burdens from income to consumption in Korea may improve social welfare by reducing excess burdens on the community to finance government expenditures.

<著者略歷>

김승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Austin 경제학 박사

미국 Princeton대 Woodrow Wilson School 연구위원/조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우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7-13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2007년 12월 22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김승래 · 김우철

발행인 황성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주) 천세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8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